폴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5
2. 주요 산업 동향 /7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0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5
대한수입규제동향 /18
관세제도 /19
주요인증제도 /20
지적재산권 /25
통관운송 /2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34
외국기업 투자동향 /36
우리기업 투자동향 /3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40
진출형태별 절차 /43
투자입지여건 /47

3. 사업관리
노무관리 /50
조세제도 /5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9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61
2. 물가정보 /64
3. 바이어발굴 /66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68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71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3
7. 이주정착 가이드 /75
8. 출장가이드 /79

Poland

1992 MAGELLAN Geographix 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폴란드 (The Republic of Poland)
위치	중부유럽
면적	312,685 ㎢ (한반도의 1.4배)
기후	대륙성 기후(동부), 해양성 기후(서부) 연평균 기온 7~10℃
수도	바르샤바 (Warszawa; Warsaw)
인구	3,812만명 (2006년)
주요도시	Warszawa (170만명), Lodz (82만명), Krakow (74만명), Wroclaw (64만 명), Poznan (58만명) 등
민족	폴란드인 (98%), 기타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
언어	폴란드어 (슬라브어 계통)
종교	가톨릭 (95%), 신교, 러시아정교 등 기타 (5%)
건국(독립)일	1918.11.11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분할 종료)
정부형태	의회공화제 (PARLIAMENTARY REPUBLIC)
국가원수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취임일: 2005.12.23
	총리: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취임일: 2007.11.23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등

나. 경제 지표

GDP	US$ 3,376억 (명목GDP, 2006년)
실질경제성장률	6.1% (2006년)
1인당 GDP	US$ 8,856 (2006년)
실업률	14.9% (2006년말)
물가 상승률	1.0% (2006년)
화폐단위	Zloty (주워티, 약자는 ZL 또는 PLN)
환율	US$ 1 = PLN 3.1025 (2006년 평균환율)
외채	US$ 1,160억 (2005년)
외환보유고	US$ 426억 (2005년)
산업구조	농림수산 4.5%, 공업 22.5%(광업 2.3/제조업 16.9/유틸리티 3.3), 건설업 4.9%, 서비스업 56.6%(상업·수선 16.8/ 부동산·임대 12.0/ 수송·보관·통신 6.3/금융 중개 3.5 등)
교역규모	US$ 1,091억(수출), US$ 1,246억(수입) (2006년)
교역품	수출: 승용차, 자동차부품, 내연기관, 의자/가구, TV, 전선류, 선박
	수입: 원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방송/TV 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중앙은행(NBP) 등

다. 한-폴란드 관계

체결협정	체육 협력 의정서 (협정일 89.5/발효일-) 투자 보장 협정 (89.11/90.2.2) 무역 협정 (89.11/90.2.2), 항공 협정 (91.10/92.4.3) 이중과세 방지 협정 (92.1/92.2.21) EDCF차관 공여 각서 교환 (-/93.2.11) 문화 협정(93.6/94.10.3), 과학 기술 협력 협정(93.6/94.10.3) 비자 면제 협정(93.11/94.10.3) 표준화 협력 양해 각서 (98.9/98.9) 경제 협력 협정(04.12.3), 관광 협정(04.12.3), 청소년 체육 교류 협정(04.12.3)
교역규모	US$ 2,613백만 (우리나라 수출) US$ 271백만 (우리나라 수입: 2006년)
교역품	컬러 TV 부품, 액정 디바이스, 승용차,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기 등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부품, 돼지고기, 산업기계, 전동축 및 기어, 타일·도자기제품, 미정제 동괴, 전구 등 (우리나라 수입)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 US$ 9억 8,120만 (91건) (2006년말)
	폴란드의 대 한국 투자: US$ 329천 (1건) (2006년말)
교민	영주권 소유자 10명 내, 체류자 781명 (2006년말 현재)

자료원: KOTIS, 한국수출입은행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정치 동향

2005년 총선과 대선을 치룬 결과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 뿌리를 두었던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형태의 좌·우파 정치세력들이 등장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우파 PiS(법과정의당)와 자유주의 성향의 PO(시민연단)가 하원내 1, 2당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과격, 인 기성 정책을 내세우는 포퓰리스트(populist) 정당인 SO(자주방위당)와 극우 민족주의정당인 LPR(폴란드가족리그)도 부상했다.

1당을 차지한 법과정의당은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여타 정당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던 바, 이후 폴란드 정국은 정당간의 이합집산에 따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2월 법과정의당 소수정부는 하원 과반수 확보를 위해 자주방위당(populist 좌파) 및 폴란드가족리그(극우파)와 안정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순한 안정협약 만으로는 안정된 정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법과정의당은 2006년 5월 자주방위당 및 폴란드가족리그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245석)을 확보했다. 연정 수립 후 자주방위당과 가족리그당의 총재가 부총리로 입각하자 정치 배경이 약한 마르친키에비츠(Marcinkiewicz) 총리의 정부 장악력이 떨어졌고, 이에 가을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06년 7월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법과정의당 총재(현 대통령의 쌍둥이 형)가 총리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2007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자주방위당과 법과정의당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이에 따라 2006년 9월 카친스키 총리는 자주방위당과의 연정 중단을 결정하고 PSL (농민당) 등 다른 당과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0월 들어 자주방위당과 연정을 재구성하였다.

2006년 11월 집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의미를 가지는 지자체 선거가 열렸으며, 그 결과 제1 야당인 시민연단이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서 주요도시와 주 의회에서 승리했고, 법과정의당은 2차 및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승리했다. 반면, 연정 파트너인 자주방위당과 폴란드가족리그는 이 선거에서 크게 몰락함에 따라 연정 내에서 법과정의당의 입지가 한결 강화되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2007년 8월 카친스키 대통령 (Lech Kaczynski)이 연립정부의 파트너 정당 소속 장관 4명 전원을 이들 정당과 무관한 인사들로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연립정부가 와해되었고, 9월초 하원이 자체 해산안을 통과시켜 10.21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기총선 결과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패하고(166석),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적 기적'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계열의 시민연단이 승리(209석) 했다. 그 외에도 좌파 민주당 (53석), 농민당(31석)이 원내 진출하여 제 6대 하원을 구성하였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시민연단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였고, 투스크 총리는 농민당과 손을 잡아 11.16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투스크 총리는 11.23일 하원 정책발표를 통해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신정부의 최대 과제로 강조했다.

신임 총리의 정책발표 중 경제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년 내 국가예산의 균형화를 도모: 2008년 재정적자 축소
- 조세와 각종 수수료 감축
- 기업가 정신 진흥을 위한 시스템 변화: 기업 설립 간소화 등
- 민영화 가속화
- EU 기금 지출에서 지방당국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농업정책에서 EU와의 협력 강화
- 고속도로 등 교통/수송 인프라 건설 가속화
- 에너지 안보 강화; 러시아데 대한 에너지 의존도 축소, 에너지 다변화 정책 등

나. 최근 사회 동향

2004년 5월 1일 폴란드가 헝가리, 체코 등 9개국과 함께 EU에 가입한 후 폴란드 경제는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데 2006년 성장률은 6.1%를 기록하여 지난 97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2007년에도 6.5%의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수출이 서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EU 가입을 틈탄 서구 기업의 동진(東進)도 가속화되어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늘어나고 있다. EU 가입을 앞두고 폴란드에서는 물가 급등, 서유럽 제품의 시장잠식, 이에 따른 많은 폴란드 업체의 몰락 등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EU 가입을 전후하여 수개월간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잠시 비관론이 힘을 얻기도 했지만, 2004년 후반부터 물가는 진정세로 돌아섰고 이후에도 2% 이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7년 들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과 인프라 투자 확대, 고용 증가(실업률 하락), 그리고 임금 상승에 따라 폴란드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상승에 힘입어 소비가 진작되고 있다. 정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잠재해 있지만, 경기호조가 이를 무마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회 불안요소가 없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단, 최근 들어 우체국, 보건(의사·간호사) 등의 공공부문에서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Polish News Bulletin 등 종합

3. 한국과의 주요이슈

한국은 폴란드와의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출초국의 위치를 지켜 왔다.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무역 불균형도 따라서 커지는 구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26억 1,333만 달러에 달한대 반해 폴란드로부터 수입은 2억 7,087만 달러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23억 4,246만 달러를 기록했다.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은 한국-폴란드 간 교역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폴란드 측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 폴란드 측은 그간 수 차례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한국 측의 배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보면, 양국간 잠재력을 개발하여 교역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폴란드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국측의 배려를 요청하는 것인데 특히, 폴란드는 자국산 농축산물 (돼지고기 등), 식품 등의 한국시장 진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폴란드의 대 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최근 한국 기업의 잇따른 폴란드 투자진출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원부자재 또는 기계장비 반출이 한국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체들은 현지 생산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함으로써 폴란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LG 전자 폴란드 생산법인의 경우 생산 물량의 90% 정도를 서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폴란드 측에 투자 진출 확대를 비롯한 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인지하게 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고용이나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對 폴란드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천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0	528,449	56,434	472,015
2001	336,568	45,571	290,997
2002	349,019	47,111	301,908
2003	382,254	73,548	308,706
2004	807,233	88,789	718,445
2005	1,174,964	116,234	1,058,730
2006	2,613,334	270,874	2,342,460
2007. 1~10	2,894,485	242,531	2,651,954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등 자료 종합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폴란드의 거시경제지표 (2003-2006년)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GDP(US$ 억)	2,166	2,528	3,024	3,376
실질 경제성장률(%)	3.7	5.3	3.3	6.1
1 인당 GDP(US$)	5,670	6,623	7,933	8,856
물가상승률(%)	0.8	3.5	2.1	1.0
실업률(%)	20.0	19.1	17.6	14.9
이자율(%)	5.25	6.50	4.50	4.00
수 출(US$ 억)	536	738	894	1,091
수 입(US$ 억)	680	882	1,015	1,246
무역수지(US$ 억)	-144	-144	-121	-155
연평균환율(US$ 대비)	3.8889	3.6540	3.2348	3.1025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중앙은행(NBP) 등

나. 최근 경제동향

최근 10년간 최고의 붐을 누리고 있는 폴란드 경제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 통계청(GUS)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3분기 성장률이 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전문가들의 평균 예상 성장률인 5.9% 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편, 폴란드 당국(통화정책위원회)은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지난 11월말 이자율 인상 조치를 취했는데 금리 인상은 올 들어 4번째가 된다.

경제성장 추이(실질 GDP 성장률)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1.2%	1.4%	3.9%	5.3%	3.6%	6.2%	6.5%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주: * 2007 년은 예측치

분기별 경제성장률

2006년				2007년			
1Q	2Q	3Q	4Q	1Q	2Q	3Q	4Q*
5.5%	6.0%	6.6%	6.6%	7.2%	6.4%	6.4%	6.0%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주: * 4분기는 예측치

최근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는 투자지출과 국내수요를 들 수 있다. 3분기 투자 지출 증가율은 19.8%로 2분기(20% 이상)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투자지출 상승세가 4분기에도 계속되면, 금년 전체로 투자 증가율이 22%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3분기 중 국내수요 증가율은 7.4%로 2분기(8.2%)와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보다 높았다. 총소비가 4.3% 증가했고, 이중 민간소비는 5.2% 늘어나서 2분기(각각 4.1%, 5.1% 증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소비 호조는 임금 상승과 노동시장 개선(고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3분기중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증가율은 6.2%를 기록했는데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공업(제조업, 광업, 유틸리티) 부문 6.6%, 건설부문 12.6%, 서비스 부문은 6.8%에 달했다.

금년 9월말까지 수출입은 모두 20% 이상 확대되었다. 지난 수년간 폴란드 경기를 주도한 수출은 9월까지 22.7%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도 25.6%나 증가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장비, 건설 기자재 수요 상승과 가처분소득 상승에 힘입은 소비재 수요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폴란드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년 1~9월		2007년 1~9월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 출	79,240	21.6	97,474	22.7
수 입	90,287	21.6	113,373	25.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한편, 인플레 우려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말 폴란드 통화정책위원회(RPP)는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는 5.0%가 되었다. 금년 들어 이자율 인상은 4월, 6월, 8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 이는 11월 인플레이션이 3.5%에 달하는 등 최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의 요인은 유럽 내 흉작에 따른 식품(곡물, 유제품 및 과일 등) 가격 상승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 추가 금리 상승說이 나오기도 했다. .

실업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금년 1월 만 해도 15.2%에 달했으나, 6월 12.4%, 그리고 11월에는 11.3%로 낮아졌다. 노동부는 12월말 기준 실업률을 11%로 예측하고 있다.

다. 향후 전망

폴란드 재무부는 금년 4분기 성장률을 6.0%로 내다보고 금년 전체로는 6.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폴란드의 금년도 GDP 성장률을 6.7% 에서 6.5%로 낮추었다. 반면, 2008년 성장 전망치는 5.5%에서 5.6%로 높였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인플레를 초래하지 않는 성장경로 유지의 부담이 현재로는 통화 정책에만 주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한 재정정책(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출을 늘리고 세입을 줄인다는 최근의 결정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낮추겠다는 폴란드의 약속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OECD의 견해이다.

OECD의 폴란드 경제전망 (2007년 12월)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민간소비	4.8%	6.1%	6.2%
총 고정자본 형성 (투자)	15.6%	21.5%	15.5%
수출	14.6%	8.9%	8.3%
수입	17.4%	13.4%	12.3%
GDP (시장가격)	6.2%	6.5%	5.6%
소비자물가지수 (CPI)	1.3%	2.3%	3.6%
실업률	13.8%	9.7%	8.4%
정부 재정균형	-3.8%	-2.8%	-3.2%

폴란드 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임금 상승을 못 따라가는 노동생산성), 우수/숙련 노동력 부족, 재정적자 문제, 인프라 개선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1월 출범한 親기업 성향의 신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주목된다.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경제부, OECD 보고서 등 종합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

최근 폴란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64.6%로 가장 높고, 공업이 24.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19%에 육박하여 규모가 큰 산업분야의 하나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상업·수리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폴란드의 산업구조 (GDP 대비 비중, 2005년)

구 분	비 중(%)
농림수산업	4.6
공업(Industry)	24.7
- 광업	2.5
- 제조업	18.5
-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	3.7
건설업	6.1
서비스업	64.6
- 상업·수리업	19.0
- 수송·보관 및 통신업	7.2
- 금융 중개업	4.1
- 부동산, 임대 등	13.7
- 기타(숙박·요식업, 행정, 방위, 교육, 보건 등)	20.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2006 (NOV 2006)

한편, 폴란드의 통계분류상 공업(industry)에는 제조업과 함께 광업, 유틸리티 등이 포함된다. 공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75%에 가까우며, 유틸리티 15%, 광업 10% 정도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제조업 부문 세부구조 (2005년)

구 분	비 중 (%)
제조업 전체	100.0
- 식음료	16.5
- 섬유 및 의류	4.2
- 목재 및 목제품	3.9
- 출판 및 인쇄	5.1
- 코크 및 정유제품	4.1
- 화학 및 화학제품	7.7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2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6.4
- 기초 금속	3.7
- 금속제품	8.8
- 기계 및 장비	8.0
- 전기기계 및 기구	4.1
- 라디오, TV 및 통신기기	1.1
- 자동차	6.5
- 가구	5.1
- 기타	8.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2006 (NOV 2006)

나. 산업부문별 동향

2003년부터 폴란드 경기가 호조로 돌아섬에 따라 대부분 산업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업 부문(광업+제조업+유틸리티)과 건설업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건설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최근 산업부문별 성장률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DP	3.8	5.3	3.5	5.8
공 업	7.8	10.5	3.9	7.7
건설업	-2.9	1.8	7.2	14.6
서비스업(market services *)	2.4	4.2	3.6	5.0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주: * market service란 서비스업 중 행정, 방위, 교육, 보건 등 공공분야를 제외한 것임

다. 주요 산업 개관

식품 및 음료부문은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이다. 특히, 2004년 5월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의 서유럽으로 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에 대한 EU의

잔존 관세와 국경통제가 제거되어 폴란드 농산품 및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폴란드 농업의 주된 수출품은 육류와 유제품 등인데 과일류와 같은 저 코스트의 노동집약 제품에서도 우위가 있다는 평가이다. EU 시장에서 폴란드산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는 저렴한 가격이 주된 요인이지만, 식품의 無공해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서구 소비자들은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2001-02년 경기침체기에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최근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생산량의 80~90%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 생산은 2005년 54만대, 2006년 75만대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단, 2004년 5월 EU 가입 후 서유럽으로부터 중고차 수입 폭증에 시달리는 내수시장은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승용차의 경우 2005년 내수판매량(23만 5천대)이 지난 1991년 이후 최악을 보인 바 있다. 다만, 2006년 들어 승용차 판매가 소폭 (1.5%) 이나마 증가하는 등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는 피아트, GM 오펠, 폴크스바겐 등 외국 제조업체가 투자 진출해 있고,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부품 업체도 많이 설립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의 기반은 탄탄한 편이다.

철강 생산은 80년대 후반과 2002년 기간 중 절반 이상 하락했다. 1990년대에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일부 플랜트들이 환경 문제 등으로 폐쇄되었고 대형 제강소 Huta Warszawa는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다. 현재 철강 생산은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Huta Katowice와 Huta Sedzimira가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결국 PHS (Polskie Huty Stali)로 통합되었고 2003년 말에는 영국계 LNM사(현 Mittal사)에 매각 되었다. Mittal은 중동부유럽의 철강생산에서 주력이 되었고, PHS는 좋은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060만 톤으로 증가한 폴란드 내 철강 생산은 2005년 국제수요 하락으로 840만 톤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6년 들어 경기호조에 힘입어 철강생산이 다시 증가하여 1,000만 톤을 돌파했다.

최근 가전산업(백색가전 등)은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BSH Bosch, Siemens, Indesit, Whirlpool, Electrolux, Fagor 등 유명 가전 업체의 직접투자에 힘입어 폴란드는 유럽의 주요 가정용 전자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2003 년 이래 경기호조와 이에 힘입은 家口 구매력 상승에 힘입어 내수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폴란드 전자시장연구소 (Electronics Market Institute)는 향후 전자 및 가전시장의 매출액이 연간 10%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LG 필립스 LCD 등이 투자 진출한 TV 및 디스플레이 분야도 향후 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겠다.

건설부문은 2000-04년 기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가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7.2%, 2006년 14.6%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도로 및 주택 건설 호조에 힘입어 2007년에도 20% 가까운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 폴란드 주택시장은 유럽 평균에 비해 아직 크게 낙후되어 있고, 1천명 당 아파트 숫자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아파트의 경우 현지 건설회사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생산이 성장세에 있는데다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도 계속되고 있어서 산업/플랜트 건설시장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건설분야의 지속 성장을 내다보는 요인이 된다.

자료원: 관련 각종 자료 종합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폴란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관련

폴란드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으로써 그 이전 제3국과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효력을 상실 한 반면, EU의 공동통상정책에 의거하여 EU가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을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되었다. EU 가입 후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은 EU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하므로 폴란드 만의 독자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 현재 EU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유럽지역은 물론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등 지중해지역, 나아가 칠레, 멕시코, 남아공 등과도 일종의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또한, EU는 현재 MERCOSUR, GCC (걸프협력회의), 터키 등과도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는 EU와 우리나라 간의 FTA 협상도 시작된 상황이다.

나. EU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EC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12.4)

□ GATT 24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 (상품교역을 포함하는 FTA 및 관세동맹)

대상국	발효일	비고
EC (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 (EU 12)	58.1.1	로마 협정(Treaty of Rome)
EC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95.1.1	EC 15 확대
EC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신 가입	04.5.1	EC 25 확대
관세동맹 (Customs Unions)		
안도라	91.7.1	공산품(industrial product) 국한
터키	95.12.31	공산품(industrial product) 국한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a) 유럽		
불가리아	93.12.3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루마니아	93.5.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덴마크(Faroe 제도)	97.1.1	기존 무역협정(1991) 대체
스위스	73.1.1	리히텐슈타인 포함
마케도니아	04.5.1	Stabilisation & Association Agreement
크로아티아	05.2.1	Stabilisation & Association Agreement
(b) 지중해		
알제리	05.9.1	유로-지중해협정
이집트	04.6.1	유로-지중해 협정
이스라엘	00.6.1	유로-지중해 협정
요르단	02.5.1	유로-지중해 협정
레바논	03.3.1	유로-지중해 협정
모로코	00.3.1	유로-지중해 협정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97.7.1	잠정 유로-지중해 협정
시리아	77.7.1	유로지중해 협정 서명. 아직 미발효
튀니지	98.3.1	유로-지중해 협정
(c) 기타		
역외 국가 및 영토 (OCT/PTOM II)	71.1.1	로마협정 PART 4 관련 국가 및 영토
칠레	03.2.1	서비스/투자 제외한 잠정협정
멕시코	00.7.1	EC-멕시코 자유무역지대 : 경제동반자, 정치협력협정
남아프리카	00.1.1	무역개발 및 협력협정으로 완전한 FTA 발효전 임시 적용

□ GATT 5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 (서비스교역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협정)

대상국	발효일	비고
EC (European Community)		
EC 12	58.1.1	로마협정(Treaty of Rome)
EC 15	95.1.1	EC 15 확대
EC 25	04.5.1	EC 25 확대
유럽 (Europe)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94.1.1	EEA가 기존 FTA 대체
불가리아	95.2.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루마니아	95.2.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기타		
칠레	05.3.1	Association Agreement
멕시코	00.10.1	EC-멕시코 경제동반자, 정치협력 협정 (1997.12.8)

□ WTO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 (상품교역)

대상국	발효일	비고
산마리노	92.12.1	관세동맹, 잠정협정

□ WTO에서 의무면제 받은 협정

대상국	발효일	비고
ACP 국가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77)	00.3.1	협력협정(Partnership Agreement)으로 EC 시장으로 특혜 접근이 가능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등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6년 폴란드의 수출은 1,0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121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였다. 2006년도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 하였으며. 지난 2005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입은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4년 5월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후 수출과 수입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EU가입 이전에 비해 수출, 수입 모두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금액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폴란드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수 출	536	738	894	1,091	1,117
수 입	680	882	1,015	1,246	1,294
수 지	-144	-144	-121	-155	-176

정보원: 폴란드 통계청(GUS)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역시 EU 역내(域內) 수입 비중이 높으며, 10대 수입대상국 중 러시아, 중국,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EU회원국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7년 10월 기준 폴란드의 對 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한 31억 1,670만 달러로 주목되고 있는데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10월 기준 수입국가 10위로 급상승하였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한국 기업 투자 진출 증가로 기계 설비, 원부자재 유입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07년 10월 기준 한국은 폴란드의 수출 시장으로는 35위를 차지하였다.

폴란드의 국 별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명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증감율
-	총합계	89,378,069	109,107,738	111,738,000	26.1
1	독일	25,224,687	29,583,349	29,112,100	18.2
2	이태리	5,482,765	6,964,727	7,436,500	25.0
3	프랑스	5,558,477	6,831,181	6,790,600	19.7
4	영국	4,995,603	6,236,586	6,650,200	28.9
5	체코	4,076,858	6,039,224	6,188,000	24.7
6	러시아	3,960,510	4,701,619	5,165,400	36.4
7	우크라이나	2,588,213	3,962,058	4,450,600	40.1
8	네덜란드	3,721,394	4,169,390	4,329,300	23.6
9	스웨덴	2,749,766	3,497,805	3,539,400	24.1
10	헝가리	2,538,222	3,319,859	3,278,800	20.0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주: *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이하 수입통계 동일)

폴란드의 국 별 수입 (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명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증감율
-	총합계	101,538,809	124,647,103	129,418,500	23.8
1	독일	25,053,447	29,707,131	31,199,800	26.2
2	러시아	8,985,501	12,135,106	11,216,600	11.1
3	중국	5,496,607	7,647,186	9,236,400	50.9
4	이태리	7,181,150	8,370,762	8,789,000	25.1
5	프랑스	6,094,739	6,799,431	6,705,500	17.7
6	체코	3,633,298	4,330,261	4,541,000	26.8
7	네덜란드	3,473,976	3,955,087	4,338,300	35.8
8	영국	3,143,418	3,544,793	4,059,500	36.2
9	벨기에	2,670,427	3,139,225	3,356,200	29.9
10	한국	1,582,997	2,894,621	3,116,700	31.9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 주력 수출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2007년(1~4월)	증감율
-	총합계	89,378,069	109,107,738	40,719,434	22
1	승용차	5,387,907	6,805,542	2,481,500	26
2	농기계부품	3,760,412	4,696,373	2,013,174	25
3	디젤엔진	3,125,502	3,549,502	1,378,574	14
4	의자	3,101,961	3,521,376	1,391,324	14
5	TV부품	1,794,257	3,418,459	1,132,484	91
6	전선, 케이블	1,968,917	2,609,901	1,013,085	33
7	선박	2,536,984	2,531,269	579,594	-0.2
8	가구 부품	2,223,022	2,410,941	911,993	8
9	정제구리	1,148,267	1,949,923	528,412	70
10	철강구조물	1,142,671	1,441,532	548,697	26

폴란드 주력 수입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항목명	2005년	2006년	2007년(1~4월)	증감율
-	총합계	101,538,809	124,647,103	46,559,324	23
1	원유	6,154,726	8,491,073	2,717,399	38
2	승용차	3,053,093	4,030,211	1,782,116	32
3	차량용부품	2,918,675	3,805,077	1,350,129	30
4	의약품	2,683,269	3,171,049	1,201,395	18
5	TV부품	1,106,307	2,728,248	753,034	147
6	원유가공품	2,094,847	2,544,871	832,993	21
7	컴퓨터부품	1,805,321	1,980,210	565,321	10
8	엔진부품	1,545,714	1,650,930	631,799	7
9	TV송수신기	1,330,818	1,600,426	120,997	20
10	선박	1,530,483	1,501,324	354,617	-2

특히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가 금년에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 근거로는 기업들의 높은 투자 의욕에 따라 기계장비 등 자본재 수입과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로교통, 환경, IT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7년 10월말 기준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2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 50대 수출국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하여 25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 폴란드 무역통계

(단위:US$ 백만,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1,174	45.6	2,613	122.4	2,895	30.9
수 입	116	30.9	270	133.0	242	6.4
수 지	1,058	-	2,343	-	2,653	-

자료원: KOTIS

최근 한국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 원부자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컬러TV/디지털TV 부품, LCD 패널, 광학기기부품 등 부품류는 물론 프레스 금형, 아연도강판, 운반하역기계 등 기계장비 및 공장 건설자재 등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승용차, 휴대폰, LCD TV 등 소비재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드디스크, DVD롬 드라이브 등 컴퓨터 부품은 2005년 폭발적인 증가(+540%)에 따른 조정으로 수출이 부진하였고 직물, 의류 등 섬유제품은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폴란드로부터의 수입도 급증세를 보이며 2006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러시아산 원유가 폴란드를 통해 수입된 것이 수입 급증의 주된 요인이다 (단, 원유를 제외해도 2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75% 신장). 아울러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산업기계, 타일/도자기제품 등 공산품과 동, 주철, 스크랩 등 원자재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 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칼라TV	755,617	91.4	605,472	-11.1
2	광학기기부품	3,927	369.3	407,347	60,955.70
3	평판디스플레이	534,257	1,316.90	395,238	-13.6
4	승용차	334,539	282	275,461	7.2
5	무선전화기	70,445	5.8	157,533	158.2
6	자동차부품	93,192	55	137,171	83.7
7	모니터	40,342	577.2	93,010	235.3
8	컴퓨터부품	118,822	-29.1	89,956	-8.4
9	무선통신기기부품	178,444	81.5	68,094	-58.7
10	기타기계류	54,427	1,567.70	57,465	17.2

자료원: KOTIS

한국의 對 폴란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37,849	111.5	55,203	104.7
2	가축육류	33,654	77.3	32,068	24.5
3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8,616	12,376.80	23,313	410.5
4	전동축및기어	16,722	-14.1	20,954	56
5	동괴및스크랩	11,500	1,438.80	13,358	64.3
6	주철	1,819	-28.1	6,230	420.7
7	운반하역기계	0	-	5,257	-
8	전기강판	1,383	2,623.30	5,146	272.1
9	직물제의류	2,863	35.7	4,878	100.3
10	전구	5,035	41.5	4,286	2

자료원: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피해 구제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 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입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 되었다.

다. 관세제도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라. 교역 관련 주요 법규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접근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 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이 폴란드를 비롯 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12월 10일 기준 총 5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이중 한 품목(철강제 관연결구)은 반덤핑 재심 조사 중이다. 또한 1개 품목(DRAM)에 대해서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1999.10.7	2000.12.28	05.5.27, 향후 5년간 지속 결정 휴비스5.7%,새한10.6%, 동우,이스트영,에스탈, 금풍,건백,삼흥각6%, 기타업체 10.6%
PET칩	3907.6020, ex3907.6080	반덤핑	99.11.6	00.11.30	05.12.1 재심 개시 07.2.27확정관세부과 결정 SK케미컬,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케미컬은 무세,기타업체는148.3유로/t
양문형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대우 3.4%, LG 12.2%, 삼성 무세 삼문형은 제외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덤핑	06.4.21	07.1.19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서류를EU측에 제출키로 함 09.3.5일부로 종료예정
철강제 관연결구류	ex7307.9311, ex7307.9319, ex7307.9930, ex7307.9990	반덤핑	01.6.1	02.8.25	반덤핑확정관세율 44% 07.8.18일부로재심조사중
DRAM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상계관세	02.7	03.8	상계관세율 32.9%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5. 관세제도

가. 개황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Taric code 문구 클릭
- Taric code 란에 HS 번호 6 자리 입력
- HS 번호를 모를 경우 Browse 를 클릭, HS 번호를 찾음
- Country of Origin 란에 수입대상국을 입력/클릭
- Simulation date 란에 원하는 날짜 입력
- 하단의 duty rate 클릭
- 해당 국가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나타남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 리의 EU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 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관세부과가액은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폴란드의 경우 7-22%)와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승용차 등)의 경우에는 특소세(Excise Tax, 5~1900%)가 부과된다.

○ 예: 총납부액 = ((송장금액 * 관세율) * 특소세율) * 부가가치세율)

2007년 현재 폴란드는 관세부과가액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해당액을 관할 세관에 납부를 완료해야 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마킹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　　　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기계(Machinery)	95/16/EC
선박(Marine Equipment)	98/37/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6/98/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3/42/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0/385/E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8/79/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0/384/E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9/5/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9/686/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87/404/E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7/23/EC
장난감(Toys)	94/25/EC
오락용 선박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킹은 관련 품목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완구류, 전자기정합성,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EU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한 의무적 시험검사가 요구되지는 않고 있다(자기인증).

- 이 경우 CE 마킹 의무자(제조자, 수입업자 등)는 스스로 자사제품이 EU 관련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EU 표준규격(소비자 안전, 위생, 환경보호 차원의 필수 요건)에 부합됨을 선언(적합성 선언)하고, 이를 증빙하는 적합성인증서를 관계당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즉, CE 마크 획득이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만으로 가능한 품목인 경우 반드시 EU 지정검사소를 통할 필요 없이 자국내 시험검사소를 통해 적합성인증서를 발급 받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단 EU 세관 등 관계당국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

○ 한편, 제품의 생산절차나 서비스절차 자체에 대한 안정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상품화 이전에 반드시 EU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ies)의 사전검증을 거쳐 CE 마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지정인증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검사 또는 현장실사 등 검사방법은 해당품목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역외국이 EU 와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자국내 검사소에서 CE 마크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 CE 마크 시험소요기간 및 시험비용은 제품群별로 천차만별이며, 소요기간 역시 그러한데 비교적 단순한 제품의 경우 몇 주(週) 내에도 가능하나,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참고로 폴란드의 관련기관들로부터 입수한 일부 제품群에 대한 CE 마크 획득비용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품군	소요기간
저전압기기	PLN 1,200 – PLN 4,500 / 약 6주
기계류	PLN 8,000 – PLN 20,000 / 3개월
신체보호장비	PLN 1,850 – PLN 3,700 / 2개월 – 4개월
완구류	PLN 500 – PLN 4,000 / 2주 – 2개월

○ 한편 CE 마킹이 요구되는 품목(群)의 경우,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폴란드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불법으로 CE 마킹을 부착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PLN 10만 (약 US$ 26,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용품 :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 신발, 섬유제품
- 관광 :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 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화란,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롬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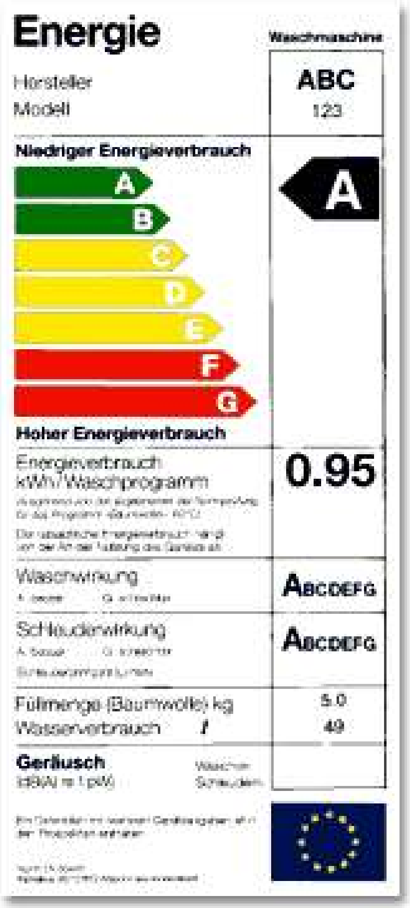

▣ 개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Energy효율등급 라벨표시 및 최저효율기준, 적용에너지효율등급, 연간 에너지소비량등 표시

▣ 대상품목

라벨표시: 냉장고, 냉동고,세탁기,식기세척기등(10품목)
최저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배터리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대기전력 절감하는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GEEA와 동일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7. 지적재산권

폴란드의 지적재산권(IPR)은 EU의 재적재산권 규정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크게 저작권(copyright)과 특허권, 상표, 디자인 등을 망라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다.

구 분	내 용
Copyright	Motion Picture, Business Software, Entertainment Software, Books, Records & Music
Industrial property	Trademark
	Patent
	기타: Design, Invention, Formula 등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수 분야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평가이며 이에 따라 폴란드는 미국 스페셜 301 조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라 있다.

'2005 스페셜 301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의 지재권 보호에서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보건부와 특허청 사이의 협력 부족으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등록 규제에 문제가 있으며, 광학미디어제품(CD, DVD, CD-ROM),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 등 불법제품(해적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보고서에 의하면, 2004 년 폴란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piracy rate)은 59%로 EU 에서 그리스(62%)에 이어 2 번째이고, 주변 체크(41%), 헝가리 (44%), 슬로바키아(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U 평균은 35%).

폴란드의 저작권 침해율과 침해에 따른 업계 손실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손실액	침해율
Motion Pictures	30	30	30	35	102	66
Business S/W	171	58	197	59	212	58
Entertainment S/W	NA	NA	109	94	NA	60
Records & Music	34	45	36	37	25	31
Books	5	NA	5	NA	5	NA
총 계	240	-	377	-	344	-

자료원: Int'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6 Special 301 Report, POLAND

가. 저작권 • 판권 (copyright)

○ 관련법규 : 저작권법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ct of 1994)

○ 2004 년 4 월 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협정(Internet Treaties)과 EU 저작권 규정의 관련부분 반영을 위해 개정

○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표현으로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저작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영화(Motion Pictures),
-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Business Software),
- 엔터테인먼트용 소프트웨어(Entertainment Software),
- 레코드 및 음악(Records & Music),
- 서적(Books) 등

○ 상기와 같은 작업물은 제작 순간부터 저작권에 의해 보호 되며, 완전치 않은 형태라고 해도 보호의 대상이 됨.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자의 사후 70 년간 보호됨.

○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 형사상으로는 5 년까지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상으로는 손실이나 로열티의 2~3 배에 달하는 금액의 배상 등이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경찰 및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또는 단속을 함. 또한, 민사상의 고소나 고발도 가능함.

○ 폴란드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 실행이 비효과적이란 지적이 많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바르샤바 스타디움 부근을 비롯해서 노천시장 등지 에서 판매되는 해적판(CD, DVD, CD-ROM 등이 대표적)에 대한 단속에서 진전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임.
- 동쪽 및 북쪽 국경(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해적판 제품을 규제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었음.

나.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관련법규 :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of 2000)

○ 관련기관 : 폴란드 특허청 (PPO)
- The 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Poland
- Add: Al. Niepodległości 188/192, 00-950 Warsaw, Poland
- Switchboard: (+48 22) 825 80 01
- Website: www.uprp.pl
- E-mail (Helpesk): ajaglowska@uprp.pl

○ 산업 재산권의 적용 대상은 매우 방대한데 상표, 특허를 비롯하여 발명, 제조법 (formula), 디자 인 등을 망라함.

○ 상표 (trademark)
- 상표란 그래픽적으로 표현된 표식으로 동 표식은 한 기업의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과 구별되게 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됨.
· 단어 (Word/s)
· 그림 (Picture)
· 패턴 (Pattern)
· 색상의 조합 (Color composition)
· 공간적 형태(Spatial form)
· 멜로디 또는 소리(Melody or sound)
- 상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폴란드 특허청(PPO)에 등록을 해야 함. 폴란드에 등록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특허관련 에이전트를 통해 상표 등록이 가능함.
-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같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PPO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신청서 양식(폴란드어), 등록할 상표,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함. 등록 소요기간은 약 2 년이나, 상표는 신청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등록관련 세부정보는 www.uprp.pl 참조).
- 상표는 특허청 등록일로부터 10 년간 보호되며, 연장 가능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함.
· 동일 제품의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마크의 사용
·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마크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마크의 사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등록상표의 독특한 성격 이나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일, 유사 또는 이종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
- 상표 침해에 대한 입증은 상표권 보유자가 하게 되어 있음.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제품의 판매 중지, 불법상표를 통해 얻은 혜택의 양도, 피해 보상,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허권(patent)
- 특허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새로운 솔루션 또는 기술 + 발명적 요소 + 산업 용도로 사용 가능"
-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폴란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신청서(폴란드어), 부대서류(관련 명세서, 개요 및 드로잉 등), 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특허 신청을 해야 함. 정식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3~4 년이 걸림.
-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 년 간 보호됨.
-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적 창조, 도표, 지적 활동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원칙론이나 방법론, 놀이(games), 소프트웨어, 정보제시 방법은 특허권에서 제외됨. 한편, 유럽 특허권 획득에 드는 비용은 특허세, 번역,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약 25,000 불의 비용이 소요됨

다.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절차

ㅇ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음.
- 침해 증거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유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특허권 및 상표
- 특허권이나 상표 침해에 대한 입증은 동 권리 보유자가 하게 되어 있음.
- 특허권, 상표 보유자는 침해를 행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권리 침해에 대한 최종 판정은 법원에서 행함.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 폴란드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폴란드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될 수 있다.

폴란드는 EU가입(2004년 5월)과 동시에 EU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세관행정으로 인해 폴란드에서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EU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폴란드 내 통관상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폴란드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신고는 소정의 공정양식(관련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표 등 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며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 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폴란드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관 절차 흐름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2) 구비 서류

통관 신고는 폴란드 관세청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 의 관세분류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센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대상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2%)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세관의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 결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세관장에게 이관한다.

중앙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 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 (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5) 통관서비스 업체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 E-mail: m.fiszer@premexpeko.pl
- WWW: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zer

○ Complex SAD
- Address: ul. Kwiatkowskiego 60, 81-127 Gdynia
- Phone: (+48 58) 621 34 48
- Fax: (+48 58) 621 34 29
- E-mail: biuro@complexsad.koti.pl
- Contact person: Ms. Malgorzata Sochaj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e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WWW: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 Sylwia Bardowska

○ **A.T. Makro Service**
- Address: Sekundowa 1 02-178 Warszawa
- Phone: (+48 22) 868 55 75
- Fax (+48 22) 868 55 63
- E-mail: info@makro-service.com.pl
- WWW: www.makro-service.com.pl
- Contact person: Mr. Mariusz Kos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uk@fransmaas.com.pl
- WWW: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uk

○ **Universal Express**
- Address: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 Phone: (+48 22) 878 35 07
- Fax: (+48 22) 878 35 75
- E-mail: marekg@uex.com.pl
- WWW: www.uexgroup.com
- Contact person: Mr. Marek Grzegorzewski

나. 운송

폴란드의 주요 무역항으로서는 GDANSK, GDYNIA, SZCZECIN 이 있으며 한국-폴란드 간 항해일수는 약 7주(약 40-45일)가 소요된다.

ㅇ GDANSK
- 주소 : ul. Zamknieta 18, 80-955 Gdansk, Poland
- 전화 : (48-58)343-9300
- 팩스 : (48-58)343-9485
- 이메일 : info@portgdansk.pl
- 홈페이지 : www.portgdansk.pl

○ GDYNIA
- 주소 : ul. Rotterdamska 9, 81-337 Gdynia, Poland
- 전화 : (48-58)627-4036
- 팩스 : (48-58)627-4285
- 이메일 : marketing@port.gdynia.pl
- 홈페이지 : www.port.gdynia.pl

○ SZCZECIN
- 주소 : ul. Bytomska 7, 70-603 Szczecin, Poland
- 전화 : (48-91)430-8470
- 팩스 : (48-91)462-4507
- 이메일 : info@port.szczecin.pl
- 홈페이지 : www.port.szczecin.pl

폴란드 내 공항은 Bydgoszcz, Gdansk, Katowice, Krakow, Lodz, Poznan, Rzeszow, Szczecin, Szczytno, Warszawa, Wroclaw, Zielona Gora 등 12개가 있으며 바르샤바에 있는 공항은 Warsaw Frederic Chopin Airport 이며 홈페이지는 www.lotnisko-chopina.pl 이다.

1) 운송비용

40 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약 7,000 유로가 든다(내륙운송, 환적 등 부대조건으로 인해 총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폴란드와 한국까지 해운 운송비는 약 3,000~4,000 유로 정도 든다.

□ 인천 – 바르샤바 항공운송료

1-100 kg	5.10 $/1kg
101-300 kg	4.80 $/1kg
301-500 kg	4.70 $/1kg
501-1,000 kg 이상	4.60 $/1kg

□ 부산 – 그디니아 해상운송료

20” 컨테이너	$2,155
40” 컨테이너	$3,785
40HG 컨테이너	$3,970
그디니아 항구비용	$290 / 컨테이너
그디니아 – 바르샤바간 컨테이너 운송비	2,530 pln / 컨테이너

2) 주요 운송회사(해운)

○ **Hanjin Shipping Poland Spolka z o.o.**

- Address: ul. Rzymowskiego 30, 02-697 Warszawa
- Phone: (+48 22) 647 06 77, 647 07 32
- Fax: (+48 22) 647 06 77
- E-mail: alina.mach@pl.hanjin.com
- WWW: www.hanjin.com
- Contact person: Ms. Alina Mach or Mr. In-Do Baik

○ **PEKAES MULTISPEDYTOR**

- Address: Spedycyjna 1 05-870 Blonie
- Phone: (+48 22) 725 34 58
- fax(+48 22) 731 81 59
- E-mail: marketing@multispedytor.com.pl
- WWW: www.multispedytor.com.pl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e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WWW: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Sylwia Bardowska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 ax: (+48 58) 323 88 11
- E-mail: info@peko.pl
- WWW: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zer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uk@fransmaas.com.pl
- WWW: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uk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진출지로서 매력도

폴란드는 서유럽과 구소연방(CIS)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고, 노동 비용이 저렴한데다 지난 2004년 5월 1일 EU에도 가입하여 최근 들어 유럽의 생산 및 아웃소싱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투자 진출의 매력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임금을 비롯한 생산 비용이 서유럽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U 가입 후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평균 임금 수준은 아직 서유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단, EU 가입을 계기로 서유럽, 미국, 한국 등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와 폴란드 인력의 서유럽 대거 이동(EU 가입 후 최소 100만 명 이상 이탈) 등의 요인으로 최근 2~3년간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기술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2004년 IMD 비즈니스 스쿨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숙련노동력 활용 가능성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의 나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 전술했듯이 최근 폴란드 인력이 서유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서 기술자 및 숙련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등 노동력 면에서의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폴란드는 서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폴란드가 EU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현지생산을 통해 EU의 까다로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

넷째, 폴란드는 국토 면적, 인구(3,800여 만 명) 및 경제 규모(2006년 GDP 3,376억 달러) 면에서 중동부 유럽 최대의 시장이며, 경제 발전에 따라 향후 내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중동구 주요국 인구 및 경제규모 비교 (2006년)

국명	인구(만 명)	GDP(억 달러)
폴란드	3,812	3,376
헝가리	1,005	1,235
체코	1,029	1,418

자료원: KOTRA 각국 국가정보

또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도 언급할 만 하다. 폴란드는 경제발전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인데 구체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 및 산업단지 설치, 지방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나. 유수 컨설팅기관의 투자환경 평가

폴란드 투자 환경과 관련,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BCG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와 관계되는 노동(비용)-물류(비용) 사이의 상쇄 효과(trade-offs)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게 중동부

유럽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여러 산업에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 더 유리한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이란 시각에서 보면, 노동비용의 내용(labor cost content)과 제품의 積荷價(cargo value of a product)가 입지 선정을 위한 결정적 기준이 된다. BCG는 유럽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낮은 적하가의 제품, 그리고 비 숙련노동 비중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중국보다 중동구에서 제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적하가가 낮은 제품이란 부피는 크나, 단위당 적하가가 낮은 제품을 말하며, 비 숙련노동 비중이 낮은 제품은 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의미한다. BCG는 중국보다 중동구에서의 제조가 유리한 제품(산업)의 예로 자동차, 백색가전, 철강, 가구 등을 들었다.

반면, 전자제품, 컴퓨터, TV 세트, 고급의류제품 및 스포츠 장비 등은 중후(重厚)한 제품이 아니고 운송비용도 크게 높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산업의 제조활동에서는 중동구 국가가 중국을 앞서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4년 7월 경영 컨설팅사인 A.T Kearney는 노동력 수준, 교육 및 언어 구사, 영업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해외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적합한 국가를 평가했는데 폴란드는 10위에 랭크된 바 있다.

해외 아웃소싱 적격국가 순위 (A.T Kearney 평가)

1위	2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11 위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체코	싱가포르	필리핀	브라질	캐나다	칠레	폴란드	헝가리

다. 투자지로서의 장, 단점

장 점	단 점
- 서유럽 대비 저렴한 생산비용 - 우수 기술인력 풍부 - 상대적으로 큰 내수시장(인구, GDP 등) -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 전략적 위치 (유럽의 중앙) - 해양수송로(발트해) 보유	- 관료주의적 병폐 잔존 - 사회보장세 등 높은 非 임금 노동비용 - 인프라 열위: 도로, 전력 등 - 최근 임금 및 숙련 노동력에서 메리트 저하: EU 가입 후 임금 상승과 우수인력의 서유럽 유출 현상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Z), 자체 보유정보 등 종합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개관

1989년 폴란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계기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2006년 말 기준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누계는 800억 유로를 넘어선다.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 등 중동부유럽 주요국 중에서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이다.

90년대 후반부터 폴란드의 FDI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106억 달러에 달해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3년간 부진을 보였으며, 200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FDI가 상승세로 전환된 주된 요인으로는 EU 가입(2004년 5월)을 들 수 있다. EU 가입은 폴란드 경제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동향

(단위: 백만 유로)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투자 유입액	4,313	9,983	7,668	11,690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나. 국가별 투자동향

2005 년 말까지 국가별 투자동향을 보면,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의 진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이 상위 4 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대 폴란드 투자 상위 10 위 안에 들기도 했으나, 대우자동차 철수 등의 여파로 2005 년 말 현재 투자누계는 4 억 8,800 만 유로로 10 위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후 LG 전자, LG 필립스 LCD 의 대형투자와 협력업체 동반진출에 따라 투자액 급증).

국 별 주요 투자분야를 보면, 네덜란드는 보험업(ING Group, Eureko), 독일은 은행업(HVB, 코메르츠은행 등) 등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통신 및 유통업(France Telecom, Vivendi Universal; Carrefour, Geant, Auchan 등)으로 진출을 선호하는데 비해 미국은 다양한 분야(Citigroup, Apollo-Rida, GM)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최근 폴란드 투자청(PAIiIZ)이 발표한 자료 (List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Poland)를 보면, 2006년 12월말 기준 세계 37개국에서 진출한 1,091개 기업이 주요 투자기업으로 올라가 있다.

투자기업의 원 국적을 보면, 독일(248개)이 가장 많고, 네덜란드 (124개), 미국(115개)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국 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명	2003 년	2004 년	2005 년	누계
총계	**4,313.4**	**9,982.6**	**7,668.4**	**75,667.0**
네덜란드	517.8	1,905.2	381.2	16,445.2
독일	222.9	1,035.1	1,507.9	12,343.0
프랑스	689.2	2,742.7	-25.5	9,573.7
미국	468.1	113.0	626.2	5,624.1
오스트리아	397.4	605.2	576.2	3,786.3
룩셈부르크	200.6	322.2	1,697.9	3,648.9
스웨덴	78.6	508.2	422.0	3,179.0
이탈리아	66.4	426.8	174.2	2,761.4
벨기에	343.7	466.2	69.0	2,667.4
영국	244.7	260.3	455.7	2,599.8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 주: 2006년 이후 국 별 통계 미발표

다. 업종별 투자동향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업종은 제조업이다. 2005 년 제조업 부문의 FDI 유입은 21 억 유로에 달했으며, 2005 년까지 누계로는 277 억 달러에 달해 전체의 37%에 육박한다. 제조업 중에서 최근 투자진출이 활발한 부문으로는 자동차 및 관련부문 (부품, 타이어 등), 식료품, 금속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업종에서 FDI 가 많이 유입되는 부문은 금융중개업, 상업・수리업, 부동산・기업 지원 활동(회계 등) 등으로 나타났다. 2005 년 말까지 FDI 누계액에서 주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역시 금융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20.3%), 상업・수리업 (18.5%), 부동산・기업지원(10%) 등의 순이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업 종	2003 년	2004 년	2005 년	누계
총계	**4,313.4**	**9,982.6**	**7,668.4**	**75,667.0**
제조업	1,719.6	3,668.2	2,131.7	27,699.7
- 식료품	134.3	148.1	415.5	4,530.3
- 목재, 인쇄 및 출판	97.4	602.5	47.4	2,985.5
- 화학제품	125.3	345.8	-47.5	2,562.6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20.6	226.8	315.1	1,978.9
- 금속제품	172.1	686.4	255.5	2,430.0
- 기계 설비	100.6	142.9	344.1	1,355.8
- 라디오, TV, 통신기기	162.5	45.4	23.2	777.1
- 자동차	684.2	770.3	325.9	4,699.1
- 기타	122.6	700.0	452.5	6,380.4
전기, 수도 및 가스	315.0	628.1	181.5	2,571.8
건설업	-56.8	131.0	65.5	1,338.9
상업·수리업	1,193.4	1,202.1	2,062.7	13,973.5
숙박요식업	31.4	-11.6	25.8	405.6
수송 및 통신	-142.1	1,782.1	-354.9	5,979.2
금융 중개업	465.4	1,846.4	2,526.6	15,385.8
부동산업 등	518.2	768.6	1,121.5	7,598.4
기타	269.3	-32.3	-92.0	714.1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주: 2006 년 이후 업종별 통계 미발표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폴란드로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2006 년 착수된 FDI 프로젝트 중 규모가 큰 건으로는 Dell 컴퓨터 공장(2 억 유로)과 Sharp LCD 플랜트(약 1 억 5 천만 유로)를 들 수 있는데 고용인력은 각 3 천명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폴란드 내 최대 외국 투자기업 현황

기업명	국가	투자분야	투자액 (백만 달러)
France Telecom	프랑스	통신	4,470
FIAT	이탈리아	자동차, 보험, 은행	1,800
KBC Bank	벨기에	은행	1,740
METRO Group	독일	유통(소매 등)	1,500
HVB	독일	은행	1,336
Citigroup	미국	은행	1,300
LG	한국	전자	1,100

자료원: 폴란드 유력지 Rzeczpospolita, 2006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투자 현황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 폴란드 투자는 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6~1998년 3년 간 투자액이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가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대우자동차의 파산과 철수 등의 요인으로 2000년 초반까지 대 폴란드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른 여건 호전과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투자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에 의하면, 2007년 9월말까지 대 폴란드 투자(누계치)는 354건 11억 2,492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월	누계
투자건수	16	15	50	62	60	354
투자액	17.6	36.5	80.0	228.3	108.9	1,124.9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주: 2007년 9월부터 건수기준 변경 -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

전술했듯이 9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는 대우차 철수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현지 TV 생산법인들이 활발히 추가 투자를 추진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LG전자(TV 부문)의 제2공장 설립투자, LG필립스LCD, LG전자 백색가전부문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에 이어서 투자진출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은 질적, 양적으로 지속 확대가 전망된다.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제조업 부문)

기업명	업종	제품	진출형태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LG 전자 무와바 생산법인	전자	컬러 TV 디지털 TV	단독투자	1,500 명	1999 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자	컬러 TV, 디지털 TV 등	단독투자	850 명	1993 년
SK 유로켐	화학	PET 원료	합작투자 (지분 63%)	80 명	2002 년
LG 필립스 LCD	전자	LCD 패널	단독투자	1,250 명	2005 년
LG 전자 브로츠와프 생산법인	전자	LCDTV, 냉장고	단독투자	1,700 명	2005 년
휴맥스	전자	디지털 셋탑박스, 디지털 TV	단독투자	54 명	2004 년
한국유리	유리	자동차안전유리	합작투자	800 명	1997 년
운화실업	자동차	안전벨트	합작투자	150 명	1997 년
제니스-모나미	사무용품	필기구	합작투자	55 명	2001 년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정리

나. 업종별, 지역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폴란드 투자는 건수로나 금액 면에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6 년말 기준 제조업은 총 건수의 66%, 총 금액의 88%를 차지하는데 특히, 전자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對 폴란드 업종별 투자현황 (2006 년말)

(단위: 백만 달러)

업 종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91**	**981.2**
농림어업	1	2.4
제조업	60	862.4
건설업	6	1.1
도소매업	13	49.2
운수창고업	2	0.2
숙박음식점업	1	2.0
서비스업	6	2.6
부동산업	2	61.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우리 기업의 투자는 그 동안 수도인 바르샤바 근교(대우자동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또는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로 반경 2~3시간 내의 지역(LG전자, SK유로켐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폴란드 남서부 독일 국경과 가까운 브로츠와프(Wroclaw) 지역이 새로운 투자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초대형 LCD패널 공장을 설립한 LG 필립스 LCD와 협력업체들, LG전자(백색가전부문)와 협력업체 등이 모두 브로츠와프 부근에 자리잡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서유럽시장으로 접근이 유리하고 교통 여건 등도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폴란드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of 2 July 2004) 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고, 경제활동자유법에 의거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 기업(현지법인)은 내국인대우의 원칙하에 일반적으로 폴란드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그러나, EU나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 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나. 투자장려 및 제한 분야

□ 장려분야

1천만 유로 이상의 대형투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5년간 최소 100개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최소 50만 유로의 투자),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투자, 환경 개선 투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 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여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을 따로 명시해 두지는 않고 있지만, 자동차, 식품가공, 물류, 백색가전, 하이테크 등의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한분야

폴란드는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이나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u>**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활동**</u>

허가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 광물 탐사 및 채굴 -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 연료 및 에너지 제조, 가공, 유통, 거래 - 항공 수송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 (register)	-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
허가 (permit)	- 주류 도매 - 주류 및 담배 제조 - 유독성,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 공항 관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 카지노의 운영 - 은행,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 운영 - 통신 서비스 - 도로 수송 -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 폐기물 처리 -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 비료 및 살충제 거래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원양 어업 -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 특정 물품 수입 및 판매: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동물, 육류, 작물 등 - 공공 전화 네트웍,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웍 이용 등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How to do business”

다. 투자 인센티브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의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요건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 지원'(Regional Aid)를 들 수 있는데 신규 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지원(Regional Aid) 제도

○ 지역 지원이란 폴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초기 또는 신규 투자(initial investment)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초기투자에는 신규기업(공장) 설립, 기존 기업 확장, 신제품, 추가제품으로 생산 다변화, 기존 기업 내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한편 지역별로 지원율은 차등을 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즉, 최고 지원율)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현행(2007~13년) 최고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 서술하는 적격비용(투자 또는 고용 창출비용)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원율 상한선은 30% 이고,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음
- 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 지원율은 더 높은데 소기업(직원 50명 미만)의 경우 각 20% 포인트가 높고, 중견기업(직원 50~250명)의 경우 각 10% 포인트가 높게 책정
- 대형 투자(적격비용 5천만 유로 이상)에 대한 지원율 수준은 낮아지는데 계산식은 이와 같음: 최대 지원액 = R x (5000만 유로 + 0.50 x B + 0.34 x C)

(* R은 지역별 최고지원율, B는 적격비용 5천만~1억 유로, C는 적격비용 1억 유로 초과)

○ 적격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적으로 적격비용(투자비용 또는 일자리 창출비용)에 근거를 두게 됨
- 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유형자산(토지, 건물, 플랜트/기계장비), 무형자산(특허, 라이선스, 노우하우 등 기술이전 관련 자산), 리스(토지, 건물) 등임
- 구입비용 또는 제조비용 (건물, 기계 및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 신규 직원 고용 비용(job creation costs)은 2년 동안의 신규 직원에 대한 노동비용 (사회보장세 포함) 임

○ 인센티브의 지원조건은 최소 5년간 투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다.

○ 한편, 지역지원의 형태에는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부동산세 감면 등이 있다.
- 현금 보조: 투자기업과 폴란드 경제부 사이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에는 투자액, 투자일정, 적용 기술, 신규 고용 인력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투자가의 신청에 대해 경제부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법인세 감면: 경제특구(SEZ) 에서만 적용됨
- 부동산세 감면

□ **경제특별구역(SEZ) 법인세 감면 제도**

○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 행정구역이다. SEZ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 SEZ 내 법인세 감면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감면은 전술한 '지역 지원'의 한가지 형태이므로 상기 지역 지원의 조건과 대부분 동일함. 단, 법인세 감면은 경제특구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름
- 감면의 한도: 적격 투자비용 x 상기 지역별(경제특구가 속한 지역) 최고 지원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율도 지역 지원과 동일(즉, 중소기업은 지원율이 10~20% 포인트 높아짐)

○ 법인세 감면을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당연하지만, 경제특구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를 위해서는 특구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입찰 또는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최소 10만 유로가 되어야 하며, 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투자 결과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 **지방세 감면 제도**

○ 부동산세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한데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등 자료 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의 형태

폴란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2004. 7. 2) 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 성격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폴란드 약어 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2006년 평균환율은 1달러에 3.1025 PLN).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폴란드 약어 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5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 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는 본사 영업범위 내의 상거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설립절차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서류로는 대표이사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인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에 와서는 영어본을 폴란드어로 다시 번역 후 공증을 받게 되어 있다.

설립코자 하는 회사의 형태(유한책임 또는 주식회사)를 결정하면,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서명할 때에는 폴란드 내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내용, 초기 자본금 액수, 주식의 수량 및 액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등록전 자본금 납부액,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 서명이 되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설립자본금(5만 PLN 이상)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공식 조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자본금 50만 PLN, 주주 수 25명을 넘지 않을 경우 선택사항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자본금(50만 PLN 이상)의 최소 25%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사를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한다. 즉,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이나 주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등기를 하는 것인데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유한책임회사
- 신청서(소정양식)
- 정관, 자본금납부 내역서(모든 이사회 구성원 작성), 주주 명단, 이사회 구성원 내역(이름, 주소, 무범죄 증명서 등),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식회사
- 신청서(소정양식)
- 정관, 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 관련 공증된 결의서, 자본금납부 내역서, 회사 경영진 명단 및 인적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등

등록 신청 후 중앙통계국(GUS)에 REGON 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REGON과 NIP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보완하면 된다.

폴란드 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폴란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정관, 서명 견본, 등기 관련서류, REGON 번호를 부여하는 GUS의 서신, NIP 등이다.

법원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유한책임회사 전액, 주식회사 25% 이상) 은행은 설립과정에 있는 회사에 이러한 결제 목적으로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회사의 정식 등록과 함께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다.

법원 등기부에 등록이 되면, 회사는 등록번호를 받고 정식법인이 된다. 한편,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송금업체(VAT remitter)로 등록되어야 한다.

다. 지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 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영문본을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는데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 기업가는 폴란드 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을 폴란드어로 해야 하므로 현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지사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공개
○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첨부
○ 정관 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첨부 등

지사는 폴란드 회계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폴란드어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지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한 후, 중앙통계국에REGON 번호 (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소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지사는 본사의 이름에 “branch in Poland”를 추가하여 등록된다. 지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나, 장부 기록은 잘 유지해 두어야 한다.

라. 대표(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의 성격상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대표사무소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 대표사무소를 설립 코자 하는 외국 기업(이하 모기업)의 명칭, 등록사무소 및 법적 지위(한국내 회사의 형태)
- ○ 모기업의 회사 형태, 자본금
- ○ 모기업의 사업 목적
- ○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폴란드내 주소
- ○ 대표사무소의 폴란드내 주소

또한, 신청서와 함께 모기업의 정관 사본 및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폴란드내 대표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한 모기업의 결의서(statement)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마. 공장 설립 절차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와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받아야 한다. 지구 종합계획(Local Master Plan)이 되어 있고 동 계획에 맞는 용도로 건설될 경우 바로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폴란드 내 대부분의 지구 종합계획이 2004년 초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경우 새로운 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용도허가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

- ○ 용도허가는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500 또는 1:1000 척도의 기본계획도(Main Plan). 기본계획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표시된 지적도(cadastral map)와 대상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시장가격
  - 건설기간 동안의 용수 및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 및 하수처리 방법, 지역의 인프라와 관련된 필요사항
  - 건설 예정 건물 및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한 그래픽을 포함한 토지개발계획과 방법
  - 투자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내역
  -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개요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 ○ 용도 허가는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Law) 및 지구 종합 계획법(Local Planning Law)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발급 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지구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행정처리 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최종 확정시까지 용도허가가 무기한 연기된다.

- ○ 용도허가에는 투자의 형태, 허가조건, 세부 준수사항이 명기되며 동 허가조건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용도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허가 발급 이후에도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동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같은 공공도로를 통해 접근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부지가 부지 사용목적이나 건설 형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 대상부지가 공공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하고
- 기존 또는 계획된 사회간접자본이 계획된 투자에 충분하고
- 농지나 삼림이 아니거나 전용허가를 이미 받은 토지여야 하며
- 환경법(Environmental Law)이나 문화재보호법(Monument Protection Law 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건축허가(Building Permit)

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는 모든 건축 관련된 설계 등 세부사항이 건축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되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설공사가 중도에 2년 이상 중단될 경우 취소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부지가 지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도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면허를 갖춘 설계사가 작성한 건축허가용 설계도면 4부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을 위해서는 착공 7일전까지 허가당국에 착공일을 통보해야 하며, 건설업체와 감리 업체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 점유허가(Occupancy Certificate)

완공 후에는 건설완료 통지서를 건축허가 당국뿐 아니라 환경 당국, 위생 당국, 소방 당국, 노동 당국에 보내야 한다. 동 통지서 접수 후 관련당국에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점유허가가 발급된다.

건설완료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일지 원본
- 건축 내용이 폴란드의 관련법규, 건축허가 조건과 부합된다는 건설업체 책임자의 보고서
- 인접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보고서(필요시)
- 감리 보고서 등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lZ), “How to do business: Poland” 등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선정시 체크 포인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즉 입지 선정은 투자할 업종과 함께 교통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상황,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체크 리스트
토지	- 토지 및 기후 상황, 지형 및 지질의 공장용지로 적합성 -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 여부 - 토지가격 및 관련 세금 등
전기	- 전기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자가발전 필요 여부 - 전력 요금체계 및 세금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용수	- 용수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저수시설 필요 여부 -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 및 공사기금 - 상수도 요금 체계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운수	- 원자재 조달용 수송수단 및 수송 소요시간 - 제품수송용 국내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 확보 가능성 - 항만, 공항 적하장 등의 취급상황 - 해상, 항공 및 육상 수송의 소요일수 및 요금체계 - 통관상의 애로 및 대책
통신	- 통신사정 및 요금체계 등
노동력 확보	- 투자지역의 통근권내 노동인구, 실업률, 연령분포 -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상황 - 인근 공장의 작업내용 및 임금수준

특히,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수송을 위한 교통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주요한 고려 요소이다. 폴란드의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에서 도로는 화물 수송의 주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중량기준 총 화물수송의 76.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고속도로 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되는 상황 이다. 투자 기업으로서는 이미 개통되었거나, 조만간 개통될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부자재 운송이나 생산제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일부 구간 개통)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A1 남북노선: 북쪽 발트해 연안 그단스크와 남쪽 체크 접경도시 연결, 총 길이 564km
- A2 동서노선: 독일 국경에서 중부의 포즈난과 바르샤바를 통과, 벨로루시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651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중)
- A4 서-남동노선: 독일 국경에서 남부의 카토비체와 크라코프를 통과,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779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 중)

나. 지역별 투자여건

우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들 수 있다.

1) 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구역(SEZ)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 개 SEZ(기술단지 1 개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SEZ 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투자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년 1 월 1 일부로 지역별 인센티브 지원율이 일부 변경되었고, 2013 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아래 외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비용의 50%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비용의 40%, 수도인 바르샤바 지역은 30%까지 면제
○ 또는 투자기업은 2 년에 걸쳐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노동비용의 50%(상기와 같이 지역별 지원율 차등)까지 조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새 일자리는 최소 5 년간 유지되어야 함

또,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폴란드 경제특별구역 현황

특구명	유효기한	총면적 (ha)
SEZ "Euro-Park" Mielec	2015	739.23
Katowicka SEZ	2016	1077.24
Suwalska SEZ	2016	331.00
Legnicka SEZ	2017	441.93
Walbrzyska SEZ	2017	492.61
Lodzka SEZ	2017	337.60
Kamiennogorska SEZ	2017	250.89
Kostrzynsko-Slubicka SEZ	2017	462.56
Slupska SEZ	2017	167.89
SEZ "Starachowice"	2017	351.48
Tarnobrzeska SEZ	2017	828.80
Warminsko-Mazurska SEZ	2017	372.10
Pomorska SEZ	2017	348.37
Krakowski Park Technologiczny (Cracow Technology Park)	2017	122.35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주: 각 특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청 홈페이지(www.paiz.gov.pl)를 참조 바람. 메뉴 중 Regions > Special Economic Zones > 개별특구로 검색

투자기업이 SEZ 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SEZ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입주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 개월이 소요된다.

○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 신청에 대한 심사
○ 추가 서류 준비
○ 투자가 수용에 대한 최종 결정(입찰)
○ SEZ 내 사업활동 허가서 발급

2)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 개 정도가 있다. 산업단지 중 일부는 SEZ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크라코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이다.

산업단지 입주시 이점으로는 일반적인 투자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운영당국이 단지 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된다.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유치청 홈페이지(www.paiz.gov.pl)에서 메뉴 중 Regions > Industry and Technology Parks > 개별 단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다. 기진출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지역

현재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바르샤바시에서 1~2 시간 거리의 주변도시, 독일 및 체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의 브로츠와프市(Wroclaw) 근방, 체코,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카토비체市(Katowice) 근방, 그리고 중부의 우지市(Lodz) 등이다.

한국 투자기업을 보면, 바르샤바 근처 1~2 시간 거리에 LG 전자 무와바,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나와 있고, 2005 년에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 LG 필립스 LCD, LG 전자 백색가전 부문 등은 브로츠와프 근교에 대규모 생산단지를 설립했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등 자료 종합)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1) 채용 및 고용계약

○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정해진 고용계약 양식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고용 계약의 종류, 계약 발효일, 근무 조건, 급여 등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업무의 종류, 업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시작일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법에 의하여 종업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동 손실이 현찰과 같이 종업원에게 위탁된 것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종업원은 3개월 급여 범위 내에서 변상토록 되어 있다.

○ 2003년부터 임시고용법(Temporary Employment Act)에 의하여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파견근로업체를 통해 임시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업체와 업무의 종류, 요구되는 자격수준, 업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급여는 폴란드 주워티화(PLN)로 지급해야 한다.

2) 법정 근로시간

○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근로시간의 초과가 가능하다.

○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보호 혹은 긴급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 고용주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초과근무시간은 단체협약, 고용주 업무규정, 고용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연중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급여의 200%
- 위에 명시된 시간 외 추가 근무시 급여의 150%

○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근무일에 쉴 수 있다.

3) 휴가

○ 모든 종업원은 매년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 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시 20일이며, 10년 이상 근무 경력시 26일이다. 근무 경력에는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기간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고등학교 인문 과정은 4년, 정규 대학 과정은 8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각급 학교의 근무 경력 인정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입사를 하는 종업원은 근무 경력 8년을 인정받아 연간 20일 휴가가 주어지며, 2년을 더 근무하면 근무경력 10년을 채워 연간 2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휴가는 첫 아이의 경우 16주, 둘째부터는 18주이며, 쌍둥이의 경우 26주이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 병가와 관련, 종업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가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기증 등으로 병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33일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4) 해고

○ 고용 계약의 해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고용 계약의 종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은 사전 서면통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3일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
- 1주일 계약기간이 2주 이상, 3개월 이내일 경우
- 2주일 계약기간이 3개월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무제한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
- 1개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경우
- 3개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 한편, 다음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 종업원이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로,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 불이행), 고용기간 중 명백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등이다.
- 종업원의 실책이 없어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나, 질병으로 총 3개월 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때 등이다.

○ 단,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또는 출산 휴가일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 중일 경우
- 정년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이 4년 이내로 남았을 때
- 임신 중인 경우

나. 임금 수준

2006년 폴란드의 기업 부문(enterprise sector)에서 월 평균임금은 2,644 PLN(주워티) 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852 달러가 된다. 한편, 2007년 9월 기준 평균임금은 2,859 PLN (최근 환율 적용시 약 1,020달러)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5% 올라갔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gross' 개념으로 피고용자 부담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 일부(payments from profit)도 포함된다.

단,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19. 8%~22.7%)는 gross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폴란드에서 임금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임금 상승의 주된 요인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경기호조가 계속 되는데다 많은 폴란드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EU 가입 후 만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 100만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부문은 건설업(9.8%), 제조업(5.9%), 부동산 및 기업활동(5.7%)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아직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평균임금 및 업종별 평균임금 현황

(단위: PLN)

업종	2006년 1~4분기 평균	상승율 (2005년 1~4분기 = 100)
전체 (기업 부문)	**2,643.92**	**105.1**
광업	4,589.65	104.3
제조업	2,425.57	105.9
전기, 가스 및 수도	3,457.89	105.0
건설업	2,577.63	109.8
상업 및 수리업	2,455.49	104.7
호텔 및 레스토랑	1,932.55	103.9
수송, 보관 및 통신	2,912.64	103.0
금융	4,686.98	105.3
부동산	2,717.80	105.7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주: 2006년 연평균 환율(PLN/US$) 3.1025

다. 노동조합 및 기타 사항

1) 노동조합 관련

폴란드에서 모든 피고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폴란드 헌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소 10명 이상의 피고용자에 의해 결성될 수 있다.

피고용자 또는 노동자는 노조 가입 또는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노조 가입을 고용이나 승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노조의 간부는 해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이나 노동조합법은 여러 사항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과잉 인력의 해고 등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인수합병(M&A)에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폴란드에서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영기업의 경우 아직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나, 민간기업에서 노조의 지위나 역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노조의 약세는 높은 실업률 등에 원인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여 사용자 측과의 마찰을 꺼리고 있다.

한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자유노조(Solidarity)의 존재 등으로 폴란드 노조가 강성으로 보이나, 실제 폴란드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분쟁 통계

연 도	파업 건수	파업근로자 수 (천명)
1999년	920	27.1
2000년	44	7.9
2001년	11	1.4
2002년	1	0.01
2003년	24	3.0
2004년	2	0.2
2005년	8	1.6
2006년	27	24.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주: 2006년 중 공공보건분야 등에서 파업 발생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은 의견 차이서(protocol of opinion differences)를 작성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밝히고 조정(mediation)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조정자(mediator)를 선택하게 되는데 경제노동부가 준비한 명단 중에서 선택하거나, 경제노동부가 제안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다.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social arbitration)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1명의 심판관과 6명의 위원(노사 양측에서 각 3명 지정)으로 구성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가 시작될 때 노사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기타 노무관련 유의사항

폴란드의 경우 낮은 노동비용이 투자 메리트의 하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임금 외에 사회보장세 등 부대 비용이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임금의 19.8%~2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기업 진출 확대, EU 확대에 따른 서유럽 노동시장의 점진 개방으로 폴란드 노동력이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어 노동력 확보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인 실업률과 노동인구 등 통계를 무조건 맹신하면 곤란하다.

노무, 공장 작업환경 등의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 등과의 협력 체제를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투자유치청 등)

8. 조세제도

가. 조세 제도 개요

○ 폴란드의 조세 제도는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폴란드의 주된 조세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인지세 등이 있다.

○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 폴란드의 조세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세무서(tax office), 조세국(tax chamber),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 있다. 세무서는 관할지역(지방)에서 세금 징수를 맡고 있으며, 조세국은 세무서들을 관리감독하고 세무서의 행정결정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무부는 폴란드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며, 조세체계 전체를 관리감독 한다.

나.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했다 (2003년 법인세율은 27%).

○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 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금 등)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세표준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총수익 - [공제대상 비용 + 이월결손금(5년내) + 소득공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경비: 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 감가상각
- 리스 비용
- R&D 비용
- 공제 가능 기부금 등

○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취득, 창출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 벌과금
- 주식, 채권 구입비
- 일부 기부금 및 선물 구입비

- 수익의 0.25%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 회원가입비: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

○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자산의 가액이 3,500 PLN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시점에서 전액 상각 또는 임의의 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특정한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rate)은 다음과 같다.
- 건물: 1.5% - 10%
- 사무기기: 14%
- 컴퓨터: 30%
- 자동차: 20%
- 플랜트 및 기계: 5% - 20%

○ 한편,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 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한편,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폴란드에 적을 둔 법인의 이익 분배를 통한 소득(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19%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해 송금된다.
- 이자, 로열티, 무형서비스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이자는 소득이면서 공제대상 비용으로 간주된다. 즉, 이자는 채무자에게는 공제대상 비용이 되며 채권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법인에 지급되는 이자는 2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로열티와 무형서비스(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2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개정 법인세법(2004. 11.18)은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 7.1 - 2009. 6.30중 10%, 2009. 7.1 - 2013. 6.30중 5%, 2013. 7.1일 이후 면제로 되어 있다.

○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다.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 폴란드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유한 또는 무한 조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정 개인의 조세 지위(tax status)는 개인이 폴란드에 '거주지'(place of residenc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폴란드에 거주지가 없는 개인(주로 외국인 임)은 비거주자로 인식되어 유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반면,

거주지가 있는 개인(주로 내국인 임)은 거주자로 인식되어 무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과 이득(benefit)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possible deduction from income)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
- 폴란드 사회보장제도 관련 납부금
-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용비(2005년부터 연간 760 PLN까지 인정) 등

○ 또한, 과세액에서 공제(possible tax deduction)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폴란드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건강보험 산출표준의 7.75%까지)
- 자선단체에 대한 헌금 (최종 과세액의 1%까지) 등

○ 2006년도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대상 소득	개인소득세율
37,024 PLN 미만	19% 빼기 530.08 PLN
37,024 - 74,048 PLN	6,504.48 PLN + 37,024 PLN 초과분의 30%
74,048 PLN 초과	17,611.68 PLN + 74,048 PLN 초과분의 40%

자료원: Doing Business in Poland, ERNST&YOUNTG
주: 적용환율 US$ 1 = 3.1 PLN

○ 상기 표에 나타난 소득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폴란드 및 해외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19%를 과세하며, 부동산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 개인에 대한 과세연도는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된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납부하며, 폴란드 고용주들이 피고용원의 보수에 대한 세액을 산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VAT)

○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되었다.
○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이다.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 부가세 기본세율은 22% 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reduced VAT rate') 과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물품/서비스별 부가세율 현황

세율	물품 및 서비스
22%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7%	- 일부 식품 - 약품 및 보건관련제품 - 일부 아동용품 - 호텔 및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건설 및 주택관련 보수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일부 수송 서비스 - 도시 서비스(상수, 하수처리, 도로 유지 등) - 비료
3%	- 농업부문에서 제조되는 원료 (2008년 4월 말까지)
0%	- EU 역내 물품 공급, 제품 수출, 일부 국제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 서적 및 특정 잡지(2007년 말까지), 선박 및 항공기용 일부 물품

자료원: How To do business, 폴란드 투자유치청

○ 일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납세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구입시 지불 부가세(input VAT라고 함)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한편, 2004년 5월 EU 가입과 함께 건축자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7%에서 22%로 인상된 바 있다.

○ 부가세 납부대상 등록회사는 구입시 지불된 부가세(input VAT)를 매출시 징수된 부가세(output VAT)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 납부업체 사이의 거래는 부가세 송장(VAT invoice)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등록된 부가세 납부업체는 매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출기업은 수출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input)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인하된 부가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입 부가세가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환급 기한이 60일, 더 짧게는 25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마. 기타 세제

○ 2004년 5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물품세법에 따라 물품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조화된 물품세 제품(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석유, 주류, 담배 등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非조화 물품세 제품(Non-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자동차, 향수 및 화장품, 전기 등 폴란드 자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이다. 물품세는 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물량기준(단위당 고정비율)에 따라서 산출된다. 재무부 장관은 연중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물품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 지방세(Local tax)에는 부동산세, 차량세(트럭과 버스에만 부과됨), 증여세, 산림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체에서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나 재무부 명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인지세(Stamp duty)는 행정행위 등에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공적인 신청, 공적 행위, 증명서, 허가 등이 포함된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How to do business" 등)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과 2004년 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로서 개인의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 송금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법(Foreign Exchange Law)이 현재 외환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은 외환 거래의 유형을 1)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 등)과의 외환거래, 2)BIT 국가(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 非OECD)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로 크게 나누고 있다.

1)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로서 EU가 아닌 국가)과의 외환거래

이 국가들과의 외환거래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특히, 거주자(기업 및 개인)는 인가 없이도 이들 국가에서 은행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발행과 거래,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구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들은 외환관련 인가 없이도 폴란드 증권, 채권 및 단기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데다 지난 1989년 폴란드와 투자 보호협정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거주자)이나 주재원(비거주자)의 경우 외환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투자협정은 소득의 송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한 지급(payment)의 태환가능 화폐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2) BIT 국가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

BIT 국가란 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BIT 국가와의 외환거래에는 다소의 제한조항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BIT 국가에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국가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등이다.

OECD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이 아닌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에서 제한의 범위는 가장 넓어진다.

나. 환율 제도

폴란드는 지난 2000년 4월 기존 환율체제인 관리 변동환율제(중앙 패리티율 및 ±15%의 변동폭 운용)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 이후 폴란드 현지화인 주워티(PLN)는 매년 소폭 평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워티화의 대US$ 평균환율(PLN/US$ 1)은 다음과 같다. 한편, EU에 가입한 2004년 중반부터 주워티화의 가치가 급등하여 주워티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초만 해도 US$에 대한 주워티 환율은 3.8~3.9에 달했으나, 하반기 이후부터 주워티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 평균환율을 보면, 최근 주워티화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7년 12월 중순 현재 달러화 대비 주워티화 환율은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달러화 대비 주워티화 연 평균 환율

(PLN/US$ 1)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환율	4.35	4.09	4.08	3.89	3.65	3.23	3.10

다. 자금 조달 방법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가장 현실적일 방법일 것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제일 큰 문제는 신용 문제가 된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본사 보증으로 해서 현지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난 뒤 사업실적(생산, 판매실적 등)과 담보(부동산 등) 등을 제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기업의 향후 수익성이 대출 결정에 중요하다는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대출금리는 LIBOR + 1~2%가 되는데 유로화로 대출할 경우 현행 금리는 5~6% 정도로 보면 된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해외투자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투자금융이란 해외투자, 해외사업 등을 하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 출자 외국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율이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중앙은행 및 현지은행 관계자 등)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중동부유럽 지역의 최대시장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3,800만을 넘는 인구는 1,000만을 갓 넘는 주변의 체코나 헝가리와 비교가 무색할 정도이며, 경제규모(2006년 GDP 3,376억 달러)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폴란드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폴란드의 소득 수준(2006년 1인당GDP 8,856달러)은 아직 체코나 헝가리에 비해 떨어지지만, 2004년 5월 EU 가입 후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가계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활발한 산업생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에 힘입어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호조와 수요 확대에 따라 폴란드 수입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수입액이 매년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수입은 680억 달러 정도였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2005년에는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6년에는 1,2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나. 가격에 민감한 시장

폴란드 소비자의 최우선 구매 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이는 1인당 GDP가 8,856 달러 정도(2006년)로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의류를 예로 들어 보면, 고객의 85~90%가 옷을 살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중시하며 부가 기능이 있는 비싼 제품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소비자들은 근검, 절약이 습관화될 수밖에 없으며, 수입품이 들어와 있는 쇼핑몰과 상점에서도 최소의 경비로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품 만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 생활의 질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반적인 저가 선호 경향에 따라 '바겐세일'을 쫓아다니는 사람(바겐세일 헌터)이 늘어나고 중고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며, 기계장비시장에서도 중고제품 비중이 높은 현상이 있다. 특히, '바겐세일 헌터'가 크게 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바겐세일 기간을 활용한 구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름(7월 초~8월 중순)과 겨울(1월 초~2월 중순) 등 2차례의 할인 기간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집중될 정도로 일반화된 상황이다. 시장 조사 기관 CBOS (사회여론조사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72%가 상품 구매시 세일이나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7% 만이 세일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성향

EU 가입과 함께 경제가 좋아지고 가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성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을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지 주요 유통업체들은 최근 고가,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TV, 홈씨어터 및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20% 정도 높은 유기농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 슈퍼마켓 체인 관계자는 구매결정시 저가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품질, 브랜드, 그리고 매장 자체의 명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매시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현지 여론 조사기관 TNS OBOP는 소비자 사이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브랜드는 구매결정을 내릴 때 가격, 품질에 이어서 3번째 고려 요소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폴란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u>

- 평소 쇼핑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 80% (가끔 39%, 자주 32%, 매우 자주 9%)
- 브랜드 제품은 품질이 높고 내구성도 좋다: 90%
- 브랜드 제품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다: 50% 이상
- 브랜드 제품은 그냥 더 낫다고 생각한다: 75%
- 브랜드 있는 제품을 신뢰한다: 78%
- 브랜드 제품을 좋아한다: 71%
- 브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하겠다: 50% 이상
- 통상 구매하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브랜드 충성도): 79%
- 눈에 익은 브랜드의 신제품이 출시되면 꼭 사용해 보겠다: 50% 이상

자료원: TNS OBOP (2005년 설문조사)

라. 계층별, 지역별로 소득격차 확대

계층별, 지역별로 시장이 나누어지고 있다. 체제전환 이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수요도 이원화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부유층은 5%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고급 브랜드제품 위주로 소비하며, 저소득층은 염가제품 위주로 구매한다. 중산층은 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시장조사기관 GfK Polonia 보고서("폴란드-빈부의 공존", 2006년)에 의하면, 지역별 구매력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컨대, 수도 바르샤바 시민의 구매력은 전국평균보다 5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과 1인당 소득을 단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2006년 폴란드 1인당 GDP가 8,856달러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바르샤바의 1인당 소득은 14,000 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구매력이 높은 지역(도시)은 바르샤바를 둘러싼 마조비안 주, 남부 공업도시 카토비체 중심의 실레지아 주 등이다. 반면, 구매력이 낮은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남동부와 동부 루벨스키에 주 등이다.

폴란드 내 의류 소비계층 분류(시장전문가)

1 그룹	- 저가의 이름 없는 제품("no name"products)에 관심 - 슈퍼마켓 등지에서 구매
2 그룹	- 평균적 구매력을 가지는 소비자 군 - 구매시 가격 이외에 품질, 스타일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 증가 - 3 개 그룹중 가장 큰 계층
3 그룹	- 소수의 부유층 - 고가, 고급제품 구매. 가격 수준에는 그다지 관심 두지 않음

마. 한국상품 인지도

폴란드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시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삼성, LG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첨단기술과 우수한 품질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전자제품 및 IT 제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 기업의 제품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2. 물가정보

□ 도시: 바르샤바(폴란드)			- 환율 : US$1 = PLN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63	7.1	구두(1켤레, 소가죽)	68
1.2	넥타이(1개, 실크100%)	80	7.2	치약(150g, 1개)	2.5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55	7.3	칫솔(1개)	3.2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	7.4	면도기(1세트)	3.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3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1.5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4
1.7	청바지(Levi's)	85	7.7	비누(1개)	1.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25	8.2	볼펜(12개)	3
2.3	닭고기(1KG, 생닭)	3.7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0.8
2.4	쌀(1KG,Short Grain)	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3
2.5	밀가루(1KG)	0.8	8.5	휴대폰(범용형)	437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3
2.7	계란(10개)	1.3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40
2.8	감자(1KG, 현지산)	0.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7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5,000
3.1	고추장(1Kg)	7	9.2	엔진오일(1L)	7
3.2	된장(1Kg)	5.5	9.3	휘발류(1L)	1.4
3.3	라면(1개)	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22.5
3.4	설렁탕류(1인분, 설렁탕, 곰탕 등)	6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00
3.5	불고기(1인분, 200g)	1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1	10.1	지하철(1구간)	0.75
3.7	김치찌개(1인분)	11	10.2	시내버스(1구간)	0.75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75
4.1	햄버거(1개)	3	10.4	택시(추가요금/Km)	0.5
4.2	피자(1판)	12.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5	11.1	전화 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3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5
4.5	담배(수입산, 1갑)	2.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2
4.6	위스키(1병, 750ml)	38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2
4.7	커피(1병, 175g)	4.7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1통, 2~3페이지)	0.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nished)	2,5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1통,10g이하, 현지-서울)	0.8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5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이하,현지-서울)	9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2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4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4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00			
6.2	VTR(6헤드, 범용)	6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90			
6.4	전자레인지	13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545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250			

□ 도시: 바르샤바(폴란드)			- 환율 : US$1 = PLN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4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38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6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7,228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9,788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12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1,236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11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2,34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13.3	골프공(1타)	41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25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5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3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9,6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6.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25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1회)	48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2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력지)	13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22			
15.4	잡지(1부,Newsweek)	2.1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9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1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95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65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30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8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050			

3. 바이어 발굴

폴란드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KOTRA에서 제공하는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외 시장 조사는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전세계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조사, 해외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서비스이다. 관심 바이어 발굴 서비스의 경우 관심 바이어를 물색, 접촉하는 과정에서 요청품목에 대한 폴란드 바이어들의 의견, 시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 폴란드 전화번호부 검색, 각종 전시회 디렉토리 입수, 각종 분야별 조합 및 단체 접촉 등이 있다.

가. KOTRA 해외시장조사 이용

인터넷(www.kotra.or.kr) 또는 고객센터(서울) 및 지방무역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접촉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지역	연락처
서울, 고객 센터	02-3460-7383
부산	051-740-7801
인천	032-421-6456
경기	031-259-7820~4
경남	055-212-1300~2
대구경북	053-383-8444
광주전남	062-611-2811~4
전북	063-214-4611
대전충남	042-864-1717
충북	043-236-4492
강원	033-256-4181
울산	052-227-7744

나. 인터넷 업체정보 검색사이트 이용

□ Panorama Firm (www.pf.pl)

북유럽에서 Yellow page 발간/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Eniro Poland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회사명, 품목, 지역에 기반한 업체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방법은 초기화면에서 'Firma/branża/słowo kluczowe'란에 회사명, 업종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업체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Miasto/woj./region Panoramy Firm'란에 도시 또는 지역명을 입력하여 검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업체정보포탈(www.TeleAdreson.pl)

TeleAdreson LLC가 운영하는 업체 정보 포탈사이트로서 전문(full-text) 검색을 지원하며 연 매출 규모, 설립 연도, 종업원 수 등 개별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방법은 초기 화면 우측단의 'English' 메뉴를 클릭하여 찾고자 하는 검색어 또는 SIC 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 Polish Export Promotion Programme (www.export-import.pl)

동 웹사이트는 독일계 벤처캐피탈 회사인 Bmp사가 운영하는 폴란드 수출/수입 알선 사이트로서 오퍼등록, 폴란드 수출/수입업체 카테고리 검색 등을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초기 화면에서 영문 웹사이트를 선택한 후, 'Firms-Domestic Offers'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Branch항목에서 찾고자 하는 업종(예:섬유/돼지고기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된다.

다. 폴란드 전화번호부 이용

매년 발간하고 있는 폴란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폴란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동 전화번호부는 경제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KOTRA 본사 3층에 소재한 무역 정보 자료실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라. 전시회 디렉토리 이용

폴란드의 3대 전시장은 포즈난 국제전시장(Poznan International Fairs; http://www.mtp.pl), 키엘체 국제 전시장(Targi Kielce, http://www.targikielce.pl) 및 크라코프 전시장(Trade Fairs in Krakow, http://www.targi.krakow.pl) 이며 동 전시장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관련전시회 참가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마. 각종 분야별 상공회의소, 조합, 협회 등 접촉

폴란드에는 지역별, 산업별로 많은 상공회의소나 조합, 협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를 접촉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다.

○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
- WWW: http://www.kig.pl/
- Address: Trebacka 4, 00-074 Warszawa, Poland
- Contact Point: Mr. Wladyslaw Jerzy Wezyk (Director of Foreign Relations)
- Phone: (48 22) 630 9609
- Fax: (48 22) 828 4199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관행

□ 수출입 관행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식품, 의약품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EU 공동의 규격인증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수입상은 원부자재를 생산 공장에 직접 공급하며, 수입한 상품을 러시아와 주변 동구권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 스톡 구매 방식을 선호

국내 시장의 불안정, 대량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 소량 다품종 구매 등의 요인으로 스톡 수입 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 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된다.

□ 불법적 거래에 주의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도 엿보이고 있다. 수입관세 및 부가세 절감을 위한 이면 계약과 거래 대금의 과소 신고(Under-Value Invoice) 요구가 많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지 마케팅 수행에 애로 요인이다.

□ 대금 결제 방식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 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수용하기도 하나, 거래가 누적되면 현금 분할 지급이나 외상 거래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해상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L/C 개설 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거래 요구를 무조건 기피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 복장

비즈니스 상담 또는 면담을 할 때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바이어나 우리 기업인이나 마찬가지이다.

□ 인사

호칭은 남성은 Mr.(폴란드어 Pan, 판), 여성은 Ms.(폴란드어 Pani, 파니-결혼 여부에 관계 없음)를 이름 앞에 붙인다. 또는 직위를 이름 앞에 붙여 불러도 좋다.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익혀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하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지엔 도브리 (Dzien Dobry)
- 감사합니다: 지엔쿠예 (Dziekuje)
- 작별인사(다시 만날때까지): 도 비제니아 (Do widzenia)

남성들은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다. 악수는 손을 지긋이 잡고 가볍게 흔드는데, 상대방의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된다. 손을 오래 잡고 있는 것은 게이들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여성과 인사할 때 남성은 인사말과 목례로 인사를 하며, 악수는 여성이 청할 때(즉, 손을 내밀 때)에만 한다.

또한 실내로 들어서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지위나 연령의 고하에 관계없는 예절이다.

□ 선물

폴란드에는 처음 만난 사람(바이어)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초면의 바이어에게 너무 과한 선물을 주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다. 바이어에게 자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회사 로고가 표시된 판촉물(펜, 노트, 작은 달력 등) 정도가 무난하다.

거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 사업 파트너 관계라면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할 만한 선물로는 인삼 제품, 한국 전통 공예품, 전통술 등이 있다.

□ **약속**

기업인(바이어)과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전에는 연락해 두어야 한다.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하고 안전하다. 정부 기관을 방문하거나 공무원과 면담 요청을 하려면 최소 2주 전에는 이메일이나 레터를 보내야 한다. 특히 정부 기관(공무원)은 면담 목적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물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컨펌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대체적으로 폴란드인은 느긋한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며, 회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전화 등으로 재촉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약속 시간보다 늦었을 때는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함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식사**

폴란드인은 따로 가리는 음식이 없으므로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없다. 최근 폴란드인 중에서 초밥(스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식도 아주 매운 음식 외에는 잘 먹으므로 한국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해도 무방하다(바르샤바 내 대부분 한국식당은 한식과 일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식사할 때 마시는 술로는 맥주나 보드카가 대표적이다. 폴란드인은 식당 등에서 정찬을 할 경우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즐기는 편이다.

다.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히 금기라고까지 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현지 문화 상 주의할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적인 질문은 좋지 않다. 폴란드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내용 -예를 들어 남자(여자) 친구, 남편(부인) 관련 사항, 자녀 관련 사항, 나이, 월급 등 금전 관련사항, 그리고 종교, 정치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묻거나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대중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지 않는다.
○ 식사 때 소리 내어 먹지 않는다.
○ 손으로 음식을 집어 주지 않는다.
○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 폴란드인은 신체 중에서 발을 '불결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잘 노출하지 않는다.
○ 사람 몸에 손대는 것(touching): 잘 모르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라. 바이어 상담/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화기애애하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위인으로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쇼팽(피아노의 시인), 퀴리 부인(노벨상 2회 수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에 잘 알려진 자유 노조 지도자 바웬사에 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데다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상담할 때는 바이어를 고객으로서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일류 기업이라고 해서 바이어에게 우월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를 앞에 두고 동료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은 실례이므로 삼가야 한다.

바이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는 대화하면서 눈길을 피하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모든 바이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하며, 직원 수가 적다든지 하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에는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해도 큰 매출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드물지 않다. 바이어와 상담 전후에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화제로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밝은 현지 업체의 활용이 권장되나, 거래 초기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래관계도 없이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년간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은 다음 에이전트 지정을 협의하거나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좋다.

현지의 일부 기업인은 아직도 사회주의 당시의 구습과 슬라브족다운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꺼린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 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등과 함께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받아들이기도 하나, 거래가 계속되면 물품 현지도착 후 지급이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L/C 개설 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거래 요구를 무조건 기피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관련

1) CE 마크를 비롯한 인증이 진입장벽으로 부상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일부 자동차부품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EU 공동의 규격인증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2) 대금결제방식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 요인과 함께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해상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현지 거래관행상 L/C 개설 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거래 요구를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통관 관련

폴란드의 EU 가입과 전산화 진전에 힘입어 통관과 관련한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 세관 관계자들은 물품 이동의 원활화보다는 불법적인 행위 적발과 검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EU 법규에 의하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 문제 때문에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통관지를 EU 여타 회원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폴란드 로컬 업체들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에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조달시장 접근시 애로사항

폴란드 내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입찰 공고, 세부 요건 등이 모두 폴란드어로 되어 있음 언어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 EU 관보의 경우 일부 영어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내용에 한정된다. 입찰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 소요된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할 때 CE 마크 등 유럽기준과 폴란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조달시장은 아직 외국 업체의 진출이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2005년 폴란드 발주 처는 EU 관보에 12,380건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이 중 98% 이상을 폴란드 업체가 낙찰 받았으며, 외국 업체가 낙찰된 232건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조달시장은 성격상 장벽이 높은 시장이며, 우리 업체는 폴란드 로컬업체나 EU 업체에 비해 현지정보, 인맥, 인지도 등 많은 면에서 불리하며, 사업 경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입찰에 직접 참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현지사정에 밝은 폴란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참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방식으로는 원 계약업체에 대한 하도급(sub-contractor) 참여, 원 계약업체에 물품을 대주는 에이전트(수입상이나 유통상)를 통한 공급, 또는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공동참가 등을 들 수 있다.

나. 투자 관련

1) 부가세 환급 관련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VAT) 환급 기간이 과다 소요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한 상황이다. 또한, 환급기한인 60일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환급에 90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진출업체의 자금 회전에 애로가 있다. 게다가 수정 신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어 캐쉬 플로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u>예시: 부가세 환급절차</u>

통관(부가세 납부)→제조(15일)→출하(1주)→부가세 신고(차월 25일) → 환급(신고 후 60일 / 수정 신고시 이날부터 60일 기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폴란드로 들여 오지 않고 부가세 유예제도가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통관하여 폴란드로 반입하는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취업비자 발급기간 과다 소요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65일 정도로 많이 소요되어 급여 지급, 공식 업무 수행 등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다. 폴란드의 취업허가서 발급이 까다롭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문제이자 여타 폴란드 진출국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원: 폴란드 수출, 투자진출 기업 사례 등)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무역거래 성공사례

○○사는 ○○장갑을 전문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이다. 동 사는 일찍이 90년대 중반부터 폴란드 시장개척을 추진했고, 2003년 즈음부터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현지 생산공장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ㅇㅇ사는 폴란드 시장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이 업체라고 해서 그간 현지 수출 마케팅에서 어려웠던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및 한국 경쟁업체의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었고,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된 점 등은 수출사업에 내내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ㅇㅇ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지시장의 여건에 맞춘 회사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ㅇㅇ사가 폴란드 시장 진출 확대에 성공한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품의 우수성이며, 다른 하나는 마케팅 전략이 좋았다는 점이다.

먼저, 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첫째, 현지시장에서 브랜드를 꾸준히 알리고 육성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경쟁업체의 저가 공세 등에 굴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브랜드를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둘째, 현지시장이 저가 중심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에 착안하여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 사의 제품은 중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높지만, 품질은 월등하다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현지화 전략과 관련하여 전술했듯이 ㅇㅇ사는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지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다.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 바이어에게 신뢰감를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현지 바이어의 소량 주문에 적극 응할 수 있고, 납기가 단축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 된다. 경쟁업체의 경우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닌 소량 오더를 선뜻 수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채널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현지 바이어 관리와 시장개척을 위한 경영진의 높은 의지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ㅇㅇ사 본사에서는 매년 현지시장에 출장 와서 바이어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돋보이며, 때로는 1개월여 장기 출장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 ㅇㅇ사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투자 관련

폴란드 바르샤바 북쪽의 무와바市(Mlawa)에 위치한 LG전자 생산법인은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1999년 3월부터 컬러TV를 생산해 왔다.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서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매년 공장 규모와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 4월, LG전자는 향후 유럽의 디지털TV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 하에 제 2공장 투자협정을 체결했는데 2010년까지 총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 1공장을 포함한 폴란드 생산법인의 PDP TV 및 LCD TV 생산능력은 연간 150만대에서 2007년 400만대, 2010년에는 600만대로 늘어나게 된다. LG전자는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디지털TV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2007년 중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LG전자는 유럽 디지털TV 분야에서 3위권이다.

폴란드 정부는 투자협정에 따라 LG전자의 생산단지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고용 및 교육 지원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측은 LG전자의 투자를 크게 반기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서유럽으로 수출에 따른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05년 4월 투자협정 체결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LG전자는 2공장 건물을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6개에서 10개로 늘렸는데 급증하는 오더를 맞추기 위해 2교대나 3교대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최근 회사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다. 매출이 2004년 3억 5천만 달러에서 2005년 9억 달러로, 생산인력은 1,1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났다. LG전자에서는 LCD TV, PDP TV 등 디지털TV의 비중이 80%에 달하며, 생산물량의 90% 정도가 서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생산법인의 성공요인이라면, 첫째,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신속히 대응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디지털 TV로의 조류에 빨리 대응하여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들 수 있다. 폴란드 시장 선점은 물론 제2 공장 설립 등도 매우 빨랐다는 평가이다. 셋째로는 밤을 새워 일하는 임직원들의 열정을 들 수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사증(비자)

한국인의 경우 한-폴란드 사증면제조약으로 인해 폴란드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최대 90 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폴란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비거주자(외국인)가 받을 수 있는 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ce visa), 노동비자(Work Visa, a residence visa with a right to employment in Poland), 임시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영구거주 허가 등이 그 것이다.

임시거주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체재할 수 있게 하며, 제한된 기한 동안 유효하다. 이 비자로 폴란드에 들어온 외국인이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국 일부터 12 개월 동안 총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허가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는 회사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voivodship) 당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비자는 외국인의 본국(home country)에 주재하는 폴란드 공관에 의해 발급된다. 비자 갱신의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주 당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임시거주 허가는 외국인이 거주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로는 폴란드 내 노동허가 발급 또는 사업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주재원 또는 취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노동허가확약(Promise) → 노동비자(Work Visa) → 노동허가(Work Permit) → 임시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무비자 입국(90 일 체류 가능)
- 주(voivodship) 노동사무소에서 노동허가에 대한 확약증(promise) 취득(약 2 개월 소요)
- 한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노동허가비자 취득(약 3 주 소요)
- 폴란드 입국 후 노동허가 취득(약 4 주 소요)
- 임시거주 허가증 또는 거주카드 취득(노동허가, 비자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 시)

폴란드의 노동허가나 거주허가 발급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구비서류도 많으며, 언어상(폴란드어 작성)의 장애도 있다. 노동허가는 보통 1 년간 유효한 것으로 발급된다.

나. 운전면허증

한-폴란드간 운전면허 상호승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약에 따르면 일국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 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룰 필요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단,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위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큼 '폴란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해외근무기간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재발급절차를 밟아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통역을 고용하여 시험을 치루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서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 이사화물 탁송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이삿짐 운송(해운 기준)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한국 내 처리 약 5일, 해상운송 6~7주, 현지 통관 및 내륙운송 7~10일).

이사화물 탁송조건은 door-to-door 방식이 일반적이나 door-to-port로 탁송하고 현지에서 통관업체를 수배하여 별도 진행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

통상 함부르크 항이 최종 환적항으로 이용되고 최종 도착항으로는 폴란드 그드니아(Gdynia) 항이 이용되는데 통관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함부르크 등으로부터 트럭킹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picture)은 폴란드 정부의 검열이 엄격하니 가급적 발송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주택 임차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임차하는 주택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현지에서는 라인하우스 라고 함) 형태이다. 월 주택임차료는 주택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바르샤바에 소재한 130 평방미터 아파트의 경우 2,000 유로에서 2,500 유로 정도 이다. 최근 외국 투자진출 증가와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아파트 임차료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통상 임차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다.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퍼니쉬드'가 일반화된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최종 입주 시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임차계약기간은 보통 1-3년이며, 임차기간 중 중도해약 시에는 2-3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1개월 임차료(또는 이의 50%)를 중개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으로는 1개월 치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 받게 된다.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 임차료에 포함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자녀 교육 (바르샤바)

폴란드에서 바르샤바 및 그 근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녀들을 주로 아메리칸 스쿨과 브리티쉬 스쿨에 보내고 있다. 아메리칸 스쿨은 ASW(American School of Warsaw)와 IAS (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of Warsaw) 등 2 개가 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 수준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대학에서 학력,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학비는 꽤 높은 편인데 ASW 의 경우 1 학년~5 학년의 연간 학비가 17,000 달러를 넘는다(학비에 포함된 이외 별도의 기부금은 없다). 브리티쉬 스쿨(The British School)의 고등학생 학비는 연간 8,800 파운드 정도이다.

ASW 는 바르샤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학 시 승용차나 스쿨 버스(월 이용료 20 만원 정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프랑스 학교, 일본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명	주소	전화/팩스
American School of Warsaw	Bielawa, ul. Warszawska 202, 05-520 Konstancin-Jeziorna	+48 22) 702 8500/ +48 22) 702 8599
The British School	ul. Limanowskiegop 15, 02-943 Warszawa, Poland	+48 22) 842 3281/ +48 22) 842 3265
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ul. Dembego 18, 02-796 Warszawa, Poland	+48 22) 649 1440/ +48 22) 649 1445

한편 폴란드에 소재해 있는 전체 국제학교는 폴란드투자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paiz.gov.pl/index/?id=92049debbe566ca5782a3045cf300a3c#1

바. 전화신청

외국인이 전화를 신청할 경우는 주택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와 여권이 있으면 된다.

거주지역의 통신회사(TP S.A., Netia 등)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통 신청 당일 신청서류 및 전화연결 가능성(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전화 연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TP SA를 통할 경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폴란드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 사업자의 본 지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기와 SIM카드 및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구입한 선불카드 금액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불카드 서비스는 Plus GSM의 Simplus, Era GSM의 Tak-Tak, Centertel의 POP 이다.

사. 자동차 구입

메이커, 모델,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이하나, EU 가입 후 현지에 공급되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스틱기어이며, 오토기어는 흔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높아진다. 자동차 모델별 가격은 현지 시장 조사 기관 SAMAR의 홈페이지(www.samar.pl)을 참조하기 바란다.

차량 보증기간은 통상 3년이며, 차량보험료는 종합보험인 경우 연간 US$ 600-700 내외인데 2004년 이후 현지화 강세로 올라가는 추세이다.

폴란드에는 현대자동차(판매법인), 기아자동차(판매법인), 시보레가 진출해 있고, 대우의 일부 차종도 생산되고 있어서 한국산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다.

아. 은행 계좌 개설

계좌개설은 간단하다.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신청 당일 계좌가 개설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단위(유로, 달러 등)를 지정하여 외화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 외화예금을 할 경우 폴란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외환 소지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 병원, 약국

현지 병원을 이용할 때는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개인병원이다.

○ LIM Medical Center
- 주소: UL.Jerozolimskie 65/79, 00-697 Warsaw
- 전화: 48 22) 458 70 00
- 웹사이트: www.cmlim.pl

○ Medicover
- 주소: UL.Jana Pawla 27, Atrium, Warsaw
- 전화: 48 22) 860 82 95
- 웹사이트: www.medicover.com.pl

○ Damian Medical Center
- 주소: UL.Walbrzyska 46, 02-739 Warsaw
- 전화: +48 22) 566 22 22
- 웹사이트: www.damian.com.pl/english

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나, 종합감기약, 두통약 등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다. 약국은 “APTEKA” 라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폴란드는 북위 49-54도, 동경 14-24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및 구 CIS국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봄은 통상 3월에 시작되어 5월(또는 6월)까지 이며 평균 기온은 -1℃에서 15℃이다. 여름은 6-8월로서 건조한 편이며 평균 기온은 21-32℃이나 매우 무더울 때는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가을은 9월부터 약간씩 추워지면서 시작되며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여 비 오는 경우가 많다.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로 날씨가 흐리고 많은 눈을 동반한다. 특히 겨울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지대 500~700mm, 중부 지역 500mm이하, 남부 산악 지대 1,000~1,100mm이다.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이다.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 0도 이하 일수는 80~130일이다.

지역별 평균 온도 및 강우량

(단위: 온도(℃), 강우량(mm))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중부	온도	-4	-2	2	5	13	16	17	19	13	6	2	0	**7.8**
	강우량	1	21	24	27	57	61	214	23	38	55	39	28	**588**
북부	온도	-1	2	3	4	9	15	18	20	14	8	4	1	**8.4**
	강우량	8	23	21	38	89	36	116	4	95	117	31	42	**620**
중서부	온도	-3	2	3	5	13	16	19	18	13	7	2	0	**8.4**
	강우량	3	50	20	42	66	86	193	40	33	59	14	32	**638**
중남부	온도	-6	1	3	5	14	17	17	18	13	6	3	1	**8**
	강우량	17	50	20	36	65	91	285	49	53	68	54	65	**823**
서남부	온도	-4	3	4	6	13	17	17	19	14	7	3	0	**7**
	강우량	5	26	14	50	65	39	238	51	37	42	29	33	**629**

겨울에는 추. 동복과 오버 코트를, 여름에는 하복을 준비하면 무난하나 여름이라도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 정도로 하강할 것을 대비하여 가벼운 긴 팔 윗도리를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온도와는 달리 춥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봄, 가을보다는 따듯하게 옷을 입고 방수 옷과 우산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현지 시간은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하절기 일광시간 절약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7시간 늦다. 따라서, 한국의 오후 18:00시는 폴란드의 12:00이며 하절기에는 13:00이다. 폴란드의 일광시간 절약제는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시간을 앞당기며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시간을 뒤로 돌린다. 일광시간 절약제가 실시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두워져 야외활동이 어렵다. 관공서의 대민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의 근로시간보다 짧으며 요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평균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시간대는 10:00-15:00 이다. 노동법은 일일 8시간 근무 중 15분을 점심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점심 시간은 길어야 30분내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업무성격상 1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

주요 기관 및 장소의 통상 근무 시간

기관 및 장소	시 간	비 고
관 공 서	08:15 - 16:15	(토, 일요일 휴무)
은 행	08:30 - 17:00	(토, 일요일 휴무)
국영기업	08:00 - 15:00	(토, 일요일 휴무)
민간기업	08:00 - 16:00	(토, 일요일 휴무)
레스토랑	13: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주 유 소	08: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백 화 점	10:00 - 22:00	(토, 일요일 영업)

다. 주요단위

폴란드 도량형은 미터법을 채택하여 거리, 넓이, 무게, 부피는 각각 m, ㎡, ㎏, ㎥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 전기규격은 230V, 50 Hz이다. 전원 소케트에 어스용 폴이 돌출된 소켓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현지 콘센트에 끼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3	m3	-
넓이	mm2	cm2	m2	km2
무게	mg	g	kg	ton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면제협정(1993.12.24 발효)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90일 내)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한-폴 비자면제협정은 현지 취업과 같은 영리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업, 주재원 파견 등 영리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적절한 비자 또는 임시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비자에는 체류목적 별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문화비자 등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단기/장기 비자가 있다. 단기비자는 최고 6개월(1회 3개월)까지 발급되며, 장기비자는 최고 5년(1회 1년)동안 발급된다.

폴란드 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임시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거류증은 최고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나 총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

폴란드 비자는 하기의 주한 폴란드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주한 폴란드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 주소: 서울 종로구 사간동 70번지
- 전화: 723-9681
- 팩스: 723-9680
- 근무시간: 09:00~12:00, 13:00~17:00 (토,일 휴무)
- 영사업무: 10:00~12:00
- 홈페이지: http://www.polandseoul.org

2) 출입국 절차

□ 폴란드 입국 절차

입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항공편으로 입국시 입국 심사를 거친 후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면 된다.

○ 입국심사: 입국심사대는 'EU 권 승객'과 'EU 권 이외의 승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인은 'EU 권 이외의 승객' 데스크로 가면 된다.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스탬프를 받으면 입국 심사는 끝난다.

○ 주의 사항
- 여권(Passport)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 혹시 수하물 컨베이어에 자신의 짐이 없을 경우에는 CIQ(세관/출입국 관리구역)내 배기지 클레임 홀에 위치한 분실물 사무소(Lost Baggage Office)를 접촉한다.

○ 세관 검사
-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 (“NOTHING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를 통해 나오며,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된다.
-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샘플 등을 카톤 박스에 담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샘플도 가급적 일반 여행가방에 넣는 것이 좋다.
-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로 가도록 되어 있고, 세관검사를 거쳐야 한다.
- 특히 2007.6.15부터 외화와 현지화를 합해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등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신고를 안 하다 발견되면 그 현금은 압수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소지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 국제선 승객이 면세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담배 200개비, 독주(위스키 등) 1리터, 와인 2리터, 맥주 2리터, 향수 50ml 등이다.
-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마약, 도덕적 또는 환경보호 사유로 금지된 물품, 사람과 동식물에 유해한 물품,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 주의 사항
- 샘플을 가지고 왔을 경우 일반 가방에 넣어 녹색 출구로 나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만약 샘플이 많아서 세관원의 주목을 끌게 되어 가방을 보자고 할 경우에 대비하여 샘플에 대한 송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장 명칭은 Non-Commercial Invoice 또는 Invoice 로 하고, 샘플임을 명시하고 가격을 아주 낮게(예: 1달러) 표기한다.

□ 폴란드 출국 절차

항공편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대를 거쳐 나가면 된다. 출국 심사대에는 여권과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한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 심사대로 나가면 된다. 단, 1만 유로 이상의 외화나 영리 목적의 물품, 또는 1945년 이전 제조물품과 같은 수출제한물품을 가진 승객은 붉은색 세관 검사(“GOODS OR CURRENCY TO DECLARE"라고 표시)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

공항에서 175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하철, 전차(트램) 등은 공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공항에서는 청사를 나오면 바로 택시 스탠드를 볼 수 있고, 택시들이 대기해 있다. 공항~시내 간의 요금은 통상 40PLN(원화 약 12,000원)을 잘 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택시 지붕에 번호(예: 9644, 9191 등)가 쓰여져 있는 택시를 타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택시를 탈 경우 바가지요금에 시달릴 수 있다.

마. 환전

1) 통화단위

화폐단위는 즈워티(Zloty, 또는 PLN)이다. 1'즈워티'는 100'그로쉐'(Groszy) 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200 즈워티가 있고, 동전은1, 2, 5 즈워티와1, 2, 5, 10, 20, 50 그로쉐가 있다. 통상 1달러는 3.00 pln 이며, 한국 원화로는 약 300원으로 보면 되나, 수시로 환율이 변동된다.

폴란드는 2004.5.1부로 EU에 가입했으며 EURO화 채택은 2009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환전 요령

시내에 있는 칸토르(Kantor/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은행의 환율 은 칸토르 보다 못하다. "칸토르"는 90년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약 3,500여 개의 칸토르가 있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요처에 많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다.

칸토르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나 동전은 환전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해주더라도 액면의 60% 정도로만 쳐준다.

칸토르는 환전시의 매입, 매도율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아침 8시-저녁 5시 사이에 개점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운영 되는 곳은 환율이 좋지 않다. 칸토르 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군데의 칸토르를 둘러 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칸토르 선택하는 것이 좋다.또한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구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 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는 환전서비스를 중지 하였다. 공항 내 환전소는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 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장소의 순서는 칸토르, 은행, 공항 내 환전소 순이다.

3) 신용카드 사용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키오스키, 기념품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의 현지화를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바. 교통/통신

1) 한국과의 교통

한국(인천)과 폴란드(바르샤바) 간에는 현재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 내 주요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네델란드 암스텔담을 경유해서 바르샤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서울 - 프랑크푸르트르 구간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다. 한국 출발시간은 오후 1시대이며,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20분 정도 기다린 후 다른 항공기로 갈아타게 되는데 바르샤바 도착시간은 오후 10시 40분이다.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이태리 로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수화물이 함께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영국을 당일 경유하는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폴란드 취항 항공사 리스트

AMERICAN AIRLINES	ALITALIA
AIR FRANCE	AUSTRIAN AIRLINES
AEROFLOT	AEROSVIT
AIR NEW ZEALAND	AER LINGUS
AIR BERLIN	AIR CANADA
AI EUROPA	AIR LITHUANIA
AIR MADAGASKAR	AIR NAMIBIA
AIR SEYCHELLES	ALL NIPPON AIRLINES
BELAVIA	BRITISH AIRWAYS
BRUSSELS AIRLINES	BRITISH MIDLAND
BWIA	CYPRUS AIRLINES
CZECH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CATHAY PACIFIC	EL AL ISRAEL AIRLINES
FINNAIR	HAHN AIR
ICELANDAIR	KLM
LOT	LUFTHANSA
MALEV	MALAYSIA AIRLINES
MEXICANA	TAM LINHAS AEREAS
PULKOVO AIRLINES	SINGAPORE AIRLINES
SOUTH AFRICAN	SAS
SWISS	TURKISH AIRLINES
TAROM	THAI AIRWAYS
TUNISAIR	US AIRWAYS
UNITED AIRLINES	QANTAS
CENTRAL WINGS	GERMAN WINGS
SKY EUROPE	WIZZAIR
EASY JET	RYANAIR
VARIG	

나. 시내 교통(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가전차(tram),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 가지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일회권 2.4Pln, 일일권 7.2Pln, 일주일권 26Pln, 한달권 66Pln의 가격이다. 4세 이하 동반 유아는 무료이고, 12세 이하의 어린이, 학생, 정년퇴직자에게는 50% 할인된다. 일회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환승 할 때마다 새로운 승차권을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버스는 5-23시, 트램은 4시-24시까지 운행된다. 지하철은 1개 노선으로 바르샤바 전 지역을 운행하지는 않는다. 23시부터 새벽 5시30분까지 운행되는 야간 버스(Night bus) 승차권 은 7.2Pln 정도이다.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Kiosk(신문 등을 파는 소형 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공항에서 175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하철, 전차(트램) 등은 공항과 연결 되어 있지 않다.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택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콜택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리에서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택시의 대기시간은 약 10분이며, 요금은 기본 5Pln에 1Km당 2Pln씩 추가된다. 시내에서는 20-30Pln이면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고,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팁에 관한 관습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게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호텔, 식당 등 방문지에서는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약10분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다. 음성통신

□ 휴대폰 임차 안내

출국 전 한국에서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폴란드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렌트할 수도 있다. 공항에 휴대폰 대여점이 있는데 출장자의 경우 여기서 빌리면 나중에 반납할 때도 편리할 것이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구로 나오면 'Airport Telecom'이란 대여점이 보인다. 구비 하고 있는 구형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휴대폰을 빌리기 위해서는 여권과 신용카드(credit card)가 있어야 한다.

ㅇ 'Airport Telecom'의 휴대폰 임차료와 사용료
- 임차료; 1일 PLN 62.77 / 1주일 PLN 242.11 / 1개월 PLN 511.12
- 통화료: 폴란드 통화 시 PLN 1.75/분, 서유럽 통화 시: PLN 3.29/분, 한국 통화 시: PLN 17. 17/분 (환율: US$ 1 = 약 3.1 PLN)

□ 공중 전화

공중전화는 공항과 호텔,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바르샤바 시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대부분 카드식이다. 전화카드는 시내 곳곳에 있는 신문 가판대(키오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카드 가격은 9 PLN(3분 통화 15회 분량), 15 PLN(3분 통화 30회), 24 PLN(3분 통화 60회) 등이 있다(1 PLN은 원화로 약 300원). 주의할 점은 폴란드 내 전화 시에는 0을 포함한 지역번호와 로컬번호를 이용해서 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바르샤바 시내에서 바르샤바 시내로 전화할 경우 022(바르샤바 지역번호)+로컬번호로 전화가 가능하다.

□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

ㅇ 호텔 객실에서 전화할 경우
- 외부연결번호 + 00 + 82 + (앞자리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ㅇ 일반 전화의 경우 (공중전화 등)
- 00 + 82 + (앞자리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ㅇ Collect Call 거는 법
- 008 + 008 + 211 + 122

라. 인터넷 이용

폴란드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일반 가정의 경우 아직도 56kb/초 속도의 다이얼업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폴란드에서는 128kb/초 정도의 속도가 브로드밴드로 인식되고 있다. 브랜드밴드 접속 방식은 ADSL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약 69%), 케이블 선을 통한 접속은 27% 정도이다.

지난 90년대 말까지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접속은 가격이 매우 비쌌다. 최근에는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들이 저렴한 가격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의 평균가격은 아래와 같다.

- ㅇ 월 15유로: 128/64 kb/초 연결
- ㅇ 월 30유로: 512/128 kb/초 연결
- ㅇ 월 55유로: 1024/256 kbt/초 연결

1급 이상의 호텔 대부분은 객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편이다.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며, 일요일은 쉬는 경우가 많다. PC 보유대수는 보통 5대~15대까지 다양하고, 각종 음료 및 스낵을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 연령층은 청년층이 많다. 시내의 주요 인터넷 카페로는 Casablanca Cafe(폴란드 최초), Omda Internet Cafe, E-nigma, Matrix net 등이 있다.

마. 우편

우편물 가격대는 취급업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난다. (환율: 1유로 = 3.8 PLN)

폴란드 국내

(단위: PLN)

	우체국	DHL	TNT	X-PRESS
편지	1.5	19	26	21
등기우편	3.7			
1KG 소포	5	24	26	21
5KG 소포	8	24	34	23

폴란드-한국 간

(단위: PLN)

	우체국	DHL	TNT	UPS	X-PRESS
편지	2.7	272	288	422.24	270.09
등기우편	8				
1KG 소포	59	398	428	288.96	474.03
5KG 소포	86	947	852	1,089.96	1,021.92

사. 호텔/식당

1) 호텔

□ 바르샤바 (Warsaw)

바르샤바의 호텔 사정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호텔 수준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며, 예약 폭주로 방이 없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다만, 국제회의나 대형 전시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호텔 방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호텔 요금은 주말이 주중보다 저렴하다. KOTRA 무역관은 시장개척단 지원 등의 목적으로 바르샤바 소재 주요 호텔과 협의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자도 무역관을 통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호텔 요금은 가끔 변동되며, 대형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객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바르샤바의 주요 호텔(4성~5성급)은 다음과 같다. 이 호텔들은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터넷도 잘 연결되어 있다.

KOTRA 현지 호텔 평가표

호텔명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부대시설	평점
InterContinental Hotel	10	10	10	10	40
Marriott Hotel	10	10	10	9	39
Hyatt Regency Hotel	9	10	10	10	39
Novotel Centrum	9	10	10	9	38
Holiday Inn Hotel	10	9	10	9	38
Jan III Sobieski Hotel	9	9	10	9	37

□ InterContinental Hotel (☆☆☆☆☆)

○ 위치
- 시내 중심인 Emilii Plater 거리에 위치하며, 바르샤바의 명물인 문화 과학궁전 맞은편에 있다.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Financial Center 건물과는 50미터 정도 거리.
- 공항(프레데릭 쇼팽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 ul. Emilii Plater 49

○ 객실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50유로 정도이며, 할인요금은 싱글 91유로, 트윈 112유로(아침식사, 제세 포함) 수준이다.

○ 인터넷 사용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1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특급 호텔로 다양한 크기의 컨퍼런스 룸, 식당, 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등 모든 편의 시설 구비

○ 연락처
- 전화: (48-22) 328-8888
- 팩스: (48-22) 328-8889
- 웹사이트: www.warsaw.intercontinental.com

☐ Marriott Hotel (☆☆☆☆☆)

○ 위치
- 시내 중심가에 있고, 바르샤바 중앙역(기차역)과 매우 가깝다. 공항에서 자동차로 20~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Al. Jerozolimskie 65/79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45유로 정도이며, 할인요금은 싱글 91유로, 트윈 105유로 (아침식사, 제세 포함) 정도이다.

○ 인터넷 사용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시설
- 특급호텔로 컨퍼런스 룸, 식당, 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등 편의 시설 구비
- 호텔 최상층에는 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바르샤바 전경을 즐기면서 각종 음료를 마실 수 있다.

○ 연락처
- 전화: (48-22) 630-6306
- 팩스: (48-22) 830-0311
- 웹사이트: www.marriott.com

☐ Hyatt Regency Hotel (☆☆☆☆☆)

○ 위치
- 시내 번화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자동차로 10분 내에 번화가로 나갈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유명한 와지엔키 공원이 있다.
- 주소: ul. Belwederska 23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45유로 정도이다. 무역관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다.

○ 인터넷 사용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특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스파(spa), 레스토랑,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 시설 구비
-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방문 시 수행원들이 투숙한 호텔

○ 연락처
- 전화: (48-22) 558-1234
- 팩스: (48-22) 558-1235
- 웹사이트: www.warsaw.regency.hyatt.com

□ Novotel Centrum (☆☆☆☆)

○ 위치
- 시내 중심인 Marszalkowska 거리에 위치하며, 바르샤바의 명물인 문화과학궁전과는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매우 가깝다.
- 공항(프레데릭 쇼팽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ul. Marszalkowska 94/98

○ 객실 요금
- 무역관을 통해 예약하면 싱글룸 78유로, 트윈룸 93유로 정도임(아침식사, 세금 포함)

○ 인터넷 사용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객실 요금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부대시설
- 1급 호텔로 식당, 바, 다양한 크기의 컨퍼런스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 구비
- 최근 레노베이션을 하여 시설이 상당히 좋다.

○ 연락처
- 전화: (48-22) 621-0271
- 팩스: (48-22) 625-0476

○ Novotel Airport 호텔과 혼동 주의: 노보텔은 시내와 공항 근처에 각 1개가 있으므로 택시 등을 이용, 호텔로 가는 경우 반드시 "노보텔 센트룸"이라고 해야 함.

□ Holiday Inn Hotel (☆☆☆☆)

○ 위치
- 바르샤바 중심가에 있다.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Financial Center 건물과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1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 ul. Zlota 48/54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00유로 정도이며, 할인요금은 싱글 90유로, 트윈 105유로(아침식사, 제세 포함) 수준이다.

ㅇ 인터넷 사용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ㅇ 각종 부대시설
- 1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컨퍼런스 룸, 식당, 사우나 등이 구비되어 있다.

ㅇ 연락처
- 전화: (48-22) 697-3999
- 팩스: (48-22) 697-3899
- 웹사이트: www.holiday-inn.com/warsawpoland

☐ Jan III Sobieski Hotel (☆☆☆☆)

ㅇ 위치
- 바르샤바 중심가에서 가까우며,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pl. Zawiszy 1

ㅇ 객실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00유로가 약간 넘는다. 할인요금은 싱글 78유로, 트윈 91유로 (아침식사, 제세 포함) 정도다.

ㅇ 인터넷 사용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사용료는 Superior 룸은 24시간 기준 15유로, 일반 객실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음)

ㅇ 각종 부대시설
- 1급 호텔로 레스토랑, 바, 다양한 사이즈의 컨퍼런스 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ㅇ 연락처
- 전화: (48-22) 579-1000
- 팩스: (48-22) 659-8828
- 웹사이트: www.sobieski.com.pl

상기 호텔 이외에도 바르샤바에는 한국 분이 운영하는 민박집도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이용이 가능하다.

ㅇ 코리안하우스
- 주소: ul. Zolny 27a ursynow, Warsaw
- 전화: 22)641-8787
- 팩스: 22)643-8127
- 이용요금: 1인실(50유로), 2인실(1인당 40유로), 4인가족실(1인당 30유로)
-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warsawkoreahouse

□ 브로추와프 (Wroclaw)

○ 여행안내센터: 71)344 3111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onopol	71)343 7041	71)343 5103	monopol@orbis.pl	UL.Modrzejewskiej 2	92
DworPolski	71)372 3415	71)372 3415	dworpol@wr.onet.pl	UL.Kielbasnicza 2	103
Maria Magdalena	71)341 0898	71)341 0920	hotel@hotel-mm.com.pl	UL.Sw.M.Magdaleny 2	125
Polonia	71)343 1021	71)344 7310	N.A	UL.Pilsudskiego 66	71

□ 우찌 (Lodz)

○ 여행안내센터: 42)633 7169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wiatowid	42)636 3817	42)636 5291	N.A	AL.Kosciuki 68	85
Grand	42)633 9920	42)633 7876	Res.logrand@orbis.pl	UL.Piotrkowska 72	110
Centrum	42)632 8640	42)636 9650	centrum@hotelspt.com.pl	UL.Kilinskiego 59/63	86

□ 크라코프 (Krakow)

○ 여행안내센터: 12)421 7787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Continental	12)637 5044	12)429 6821	Res.continen@orbis.pl	UL.Armii Krajowej 11	144
Forum	12)261 9212	12)269 0080	Dh.krforum@orbis.pl	UL.M.Konopnickiej28	191
Pollera	12)422 1044	12)422 1389	rezerwac@pollera.com.pl	UL.Szpitalna 30	77
Demel	12)636 1600	12)636 4543	hotel@ demel.com.pl	Ul.Glowackiego 22	122
Grand Hotel	12)421 7255	12)421 8360	grand@kr.onet.pl	UL.Slawkowska 5/7	189
Cracovia	12)422 5122	12)421 9586	cracovia@orbis.pl	Al.Focha 1	171
Francuski	12)422 5122	12)422 5270	francuska@orbis.pl	Ul.Pijarska 13	163
Logos	12)632 3333	12)632 4210	Logos-kr@intercom.pl	UL.Szujskiego 5	100

□ 포즈난 (Poznan)

○ 여행 안내 센터: 61)852 6156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ercury	61)855 8000	61)855 8955	mercury@orbis.pl	UL.Roosvelta 20	113
Novotel	61)877 0011	61)877 3654	rez.npoznan@orbis.pl	UL.Warszawska 64	96
Poznan	61)833 2081	61)833 2961	hpoznan@orbis.pl	PL.Andersa 1	95
Lech	61)853 0151	61)853 0880	N.A	UL.Sw Marcin 74	60
Batory	61)832 4481	61)832 4230	info@batory.pl	UL.Leszczynska7/13	84

□ 그단스크 (Gdansk)

○ 여행 안내 센터: 58)301 4355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Novotel	58)301 5611	58)301 5619	res.ngdanski@orbis.pl	UL.Pszenna 1	99
Hevelius	58)301 5631	58)301 1922	hevelius@orbis.pl	UL.Heveliusza 22	125
Szydlowski	58)345 7040	58)344 3877	office@hotel-szydlowski.com.pl	UL.Grunwaldzka 114	109
Posejdon	58)553 1803	58)553 0228	posejdon@orbis.pl	UL.Kapliczna 30	97
Marina	58)553 2079	58)553 3159	marina@orbis.pl	UL.Kapliczna 30	114
Talar	58)309 0882	58)306 5865	N.A	UL.Trakt Sw.Wojciecha 212	52

□ 카토비체 (Katowice)

○ 여행안내센터: 32)599 414

(요금 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ilesia	32)596 211	32)596 140	silensia@orbis.pl	UL.Piotra Skargi 2	123

○ 참고 사이트: www.poltravel.com (All hotels in Poland)

나. 식당

바르샤바에는 폴란드 전통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유럽식 식당, 일본 식당, 중국 식당, 베트남 식당 등 다양한 식당이 있다. 한국식당도 분점 등을 포함하면 10개 정도 된다.

식사 시 즐겨 마시는 술은 대개 보드카, 맥주, 포도주 등이다.

폴란드의 수질은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도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서 마신다.

□ 바르샤바 시내의 주요 식당

각 전화번호 앞에 바르샤바 지역번호 022 생략

폴란드 전통 식당

식당명	전 화	주 소	비 고
Belvedere	841-2250	Agrykola 1	유명한 와지엔키 공원 안에 있어 바깥 풍 경을 즐길 수 있음. 폴란드 전통식과 일반 양식 등
U Fukiera	831-1031	Rynek Starego Miasta 27	구 시가지(올드 타운)에 위치. 폴란드 전통 요리 및 일반 양식 등
Przy Zamku	831-0259	Plac Zamkowy 15/19	구 시가지 초입의 왕궁 근처에 위치. 폴란드 전통식 등
Polska "Tradycja"	840-0901	Belwederska 18A	폴란드 전통 음식 전문
Villa Nuova	885-1502	Kostki Potockiego 23	바르샤바 남쪽의 빌라노프 궁전 근처에 위치. 폴란드 전통식을 맛볼 수 있음

한국 식당

식당명	전 화	주 소	비 고
아카시아	636-6767	Jana Pawla Ⅱ 61	시내 중심가에서 가깝고 식당이 깔끔함. 스시를 주종으로 하며, 각종 한국 음식 서빙
한강	549-9152	Walbrzyska 11 lok 159	한식당 중 가장 크고, 다양한 크기의 방으로 구분됨. 삼겹살, 보쌈 등 각종 한국 음식 서빙
라스(LAS)	642-1471	Kostki Potockiego 24A	바르샤바 남쪽 빌라노프 궁전 근처에 위치. 삼겹살, 차돌박이 등
아리랑	862-2000	Wolnosz 7	다양한 한국 음식 서빙
한반도	863-3026	Popularna 5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음. 한국 음식과 짜장면, 짬뽕 등

일본 및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주 소	비 고
Nippon-Kan	585-1028	Nowogrodzka47A	시내 중심가에 위치. 스시, 우동 등 다양한 일식 서빙
Tokio	827-4632	Dobra 17	스시, 스키야키 등 일식과 함께 중국식 면류 서빙.
Cesarski Palac	827-9707	Senatorska 27	시내 중심가에 위치. 북경 오리 요리 등 다양한 중국식 서빙

아. 관공서 관행

공산주의 체제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한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관공서의 민원 서비스 수준과 전산화 정도가 낮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1989년의 체제 전환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2004년 5월 1일의 EU가입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정착이 가속화되어,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탈피되었다.

한편 업무처리에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책임 회피 관행이 아직 불식되지 않아 완벽한 서류 제출과 보완을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기가 어렵다.

관공서에 방문할 때에는 소액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는 경우,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므로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고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깔끔한 외모를 갖추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번호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오는 사람대로 번호표를 이용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의라고 판단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남을 앞 치고 가는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자기 차례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문의할 사항이 많으면 잊지 않고 한꺼번에 묻도록 문의 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공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행정 업무 종류마다 근무 시간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공서에 가기 전에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무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1-2분 지났다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자. 공휴일

1) 공휴일(2008년 기준)

날짜	공휴일	현지어	비고
1.1	신정	Nowy Rok	
3.23~24	부활절	pierwszy dzień Wielkiej Nocy drugi dzień Wielkiej Nocy	매년 변동
5.1	노동절	Święto Państwowe	폴란드에서는 노동절이라하지 않음
5.3	제헌절	Święto Narodowe Trzeciego Maja	
5.22	성체축일	dzień Bożego Ciała	매년 변동
8.15	성모승천일	Wniebowzięcie Najświętszej Maryi Panny	
11.1 및 3	만성절	Wszystkich Świętych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다음주 월요일이 공식 휴일로 지정됨
11.11	독립기념일	Narodowe Święto Niepodległości	
12.25~26	성탄절	drugi dzień Bożego Narodzenia	

2) 출장지양 기간

전 초.중.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전에 2주일간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에 들어가며 학생들 방학 중 에는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미리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5월1일과 5월 3일이 있는 주간은 피크닉 주간이라고 하여 대부분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로 특히 관공서의 '연휴'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치안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살인,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강력 조직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Skin Head족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알려진 우범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비스와' 강 동쪽 북부의 프라가(Praga)지역 등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 이다. 베트남, 중국인에 대해 간혹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2) 식수

석회질이 많고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수돗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은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3) 저기압

폴란드는 기압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취침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저기압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4) 팁 관행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다. 주로 음식점, 호텔, 이발소, 카페 등에서는 팁을 기대한다.

5) 여권 관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 장소, 대중 교통 수단 등지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현지인에게 방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여권을 맡기지 말자.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우리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약국에서 감기약 등 간단한 약품은 그냥 구입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 많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으며, 'APTEKA' 라는 간판을 찾으면 된다.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는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많은 애로가 있다. 다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 이다. 시내 중심에 있는 병원은 림 센터(LIM Medical Center)와 메디커버(Medicover) 이다.

☞ 바르샤바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병원

ㅇ Medicover
- 주소: ul. Jana Pawla 27, Atrium
- 전화번호 : (48 22) 9596 (핫라인)

ㅇ LIM Medical Center
- 주소: ul. Jerozolimskie 65/79
- 전화번호 : (48 22) 458-7000

ㅇ Damian Medical Center
- 주소: ul. Walbrzyska 46
- 전화번호 : (48 22) 566-2222

카. 유용한 연락처

1) 응급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비 고
경찰	997	교통사고 포함
화재	998	
응급환자	999	
전화안내	118 913	
24시간약국	825 6986	바르샤바 중앙기차역 (Central Station) 구내 소재
카드분실신고	625 4030	Amex 카드
	515 3000	비자/마스터카드(24시간 운영)
콜택시	9191,9621,9622,9623, 9624 등	9191과 9623이 비교적 영어가 잘 통함

2) 한국 기관 연락처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	Ul.Szwolezerow 6, 00-464 Warsaw	(22)559-2900	(22)559-2905
KOTRA 바르샤바무역관	Ul.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22)520-6230	(22)520-6231

주: * 대사관 영사 콜센터: +48-601328893 (평일: 17시 이후, 휴일의 경우)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쇼핑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호박(Amber)과 전통 술 '보드카'가 유명하다. 구 시가지 내에 호박 취급 점이 있으며, 시내 각처와 호텔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 owski) 근처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박 매장도 있다. 폴란드의 호박 부존량이 많지 않아 상당량의 호박 원석을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석을 가공하여 각종 장신구(브로치, 목걸이, 반지 등), 주방 용품 등은 물론 장식등까지 제작하고 있다. "Zubrowska" 보드카는 독특한 향이 나는 풀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 이다. 이외에도 "Chopin" 보드카는 병 모양이 예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선물 증정용으로 많이 구입한다. 대체로 폴란드산 보드카 가격은 50 pln (14 달러) 내외이다.손으로 수를 놓은 폴란드 특산 식탁보도 이색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는데, 폴란드 민속품 판매 체인인 Cepel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Cepelia는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

2) 폴란드 문화, 이것만은 주의하자

- 유럽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 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의 예로는 남자(여자) 친구, 남편(부인) 관련사항, 자녀 관련 사항, 나이 관련 사항, 월급 등 금전 관련 사항, 그리고 종교, 정치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 대중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
- 식사 때 소리를 내서 먹는 것
- 손으로 음식을 집어 주는 것
- 공공 장소나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폴란드에서 발은 인체의 '더러운' 부분으로 인식되므로 발을 잘 노출하지 않는다.
- 사람 몸에 손대는 것(touching): 잘 모르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 악수할 때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3) 유용한 현지어 표현과 단어

- 안녕하십니까?: Dzien Dobry (지엔 도브리)
- 감사합니다: Dziekuje (지엔쿠예)
- 만나서 반갑습니다: Bardzo mi milo (바르조 미 미오)
- 작별인사 (다시 만날때까지): Do widzenia (도 비제니아)
- 저는 한국인입니다: Jestem Koreanczykiem (예스템 코레안취키엠)
- 여기는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Tu jest bardzo ladnie (투 예스트 바르조 와드니에)
-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Pogoda jest bardzo dobra (포고다 예스트 바르조 도브라)
-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Nazywam sie 홍길동 (나지밤 시엥 홍길동)
- 예/아니오: Tak (탁) / Nie (니에)
- 환전소: Kantor (칸토르)
- 영수증: Rachunek (라후넥)
- 물: Woda (보다)
- 맥주: Piwo (피보)

2) 관광명소

□ 바르샤바 및 근교지역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는 남쪽 국경 산악지역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발틱해로 흘러 들어가는 비스와(Wisla)강과 모스크바-베를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폴란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상으로는 북위 55도에 위치하며, 면적은 485㎢, 인구는 165만 명에 이른다.

바르샤바는 13세기에 도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413년 마조비아 공작 Janusz The Elder에 의해 마조비아 공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1526년 마조비아 공국이 폴란드 왕의 직속 영토가 되면서 1569년부터 폴란드-리투아니의 왕국의 연합의 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596년 Zygmunt 3세는 당시 왕궁인 크라코프(Krakow)소재 바벨성이 소실되자 왕궁을 바르샤바로 옮기면서 폴란드의 수도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었던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중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으나, 전후에 복구되어 현재 폴란드의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왕궁(Royal Castle), 구시가 광장(인어동상, 바르샤바 역사박물관 등), 퀴리 부인 생가 & 박물관, 바르샤바 봉기 영웅 기념비, 무명용사 기념비, 성 세례요한 대성당, 와지엔키 공원, 빌라노프 궁전, 문화과학 궁전 등이 있으며, 바르샤바에서 50Km 떨어진 인근 젤라죠바볼라에는 쇼팽 생가가 있다.

□ 와지엔키 공원(Lazienki)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 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 장소였는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한다.

러시아의 여황제 애카데리나 2세의 젊은 연인으로서 그녀의 후광으로 왕이 된 Poniatowski는 정치적으로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 영토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삼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예카테리나 2 세로부터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후에 퇴위하여, 1798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Poniatowski왕은 열렬한 그림 애호가로서 당시 이 공원내의 궁에 회화와 조각품 5천 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가 페테르부르크로 갈 당시에 약 2천 점을 가지고 갔다.

2차 대전 당시 이 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그림들은 독일로 유출되었고 1944년 큰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완전히 불타는 수난을 겪었으나 복구되어 지금은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는 보리수 나무 아래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5~9월 사이 매주 일요일 12시, 16시에 쇼팽의 피아노 연주회가 무료로 열리고 있어 많은 바르샤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공원의 동쪽에는 귀족들이 수렵 휴식을 취하던 '레스트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며, 금세 기 초의 유명한 폴란드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였던 파테레프스키의 박물관도 이곳에 있다. 또한 남쪽에는 식물원과 함께 야외극장 등이 있다.

□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폴란드 왕국의 상징인 이 왕궁은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으며,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수개의 부속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야기에오' 왕조의 마지막 왕이던 '지그문트 아우구스투스'왕 시절이며, 그는 종래의 건물을 '우아드로'라는 궁정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오늘날의 르네상스식 왕궁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의 침입과 대형 화재로 크라코프의 바벨궁이 큰 손실을 입자, 1596년 Zygmunt Waza 3세는 수도를 바르샤바로 천도하고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 (구시가의 입구에 높이 서 있는 높다란 원주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그문트왕의 동상임).

이후에도 이곳은 역대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스웨덴의 침입으로 왕궁이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다.

16,17세기에는 이 왕궁이 의회(Sejm)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또한 1791년 5월 3일 이곳에서 유럽최초로 성문헌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폴란드의 현대 국가 형성을 목표로 "무혈혁명"이라고 까지 불리워진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8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왕궁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나치의 침략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이 왕궁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1971년부터 이 왕궁을 복구하자는 국민들의 열광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의 헌금과 정성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1988년에 이르러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다.

□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바르샤바 남쪽 교외의 빌라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17세기 중엽 회교도의 침입에 대항하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구출했다는 평가를 듣는 비엔나 전투 의 영웅 '얀 소비에스키' 3세의 여름 별궁으로 건립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이 건물은 바로크식의 궁전건물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가 출신인 '소비에스키'왕의 왕비가 정성을 쏟아서 조경하였다는 프랑스식 정원이 유명하다.

□ 무명용사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외곽인 승리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약 130년의 기간 동안 죽어간 수많은 무명용사를 위해 1925년 건립되었다.

Saxon궁의 3중 아케이트로 건립되었으나 Saxon궁은 1944년 파괴되고 현재는 아케이드와 무덤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무명용사의 유해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교전지에서 가져온 흙을 담은 14개의 항아리도 묻혀있으며, 2차 대전 후 대리석판이 추가되었고, 폴란드 및 외국 주요 인사의 중요 행사 시에 헌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1862년 설립된 바르샤바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이 1916년에 국립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26년 건축되었으며, 초대 및 제2대 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립미술관으로 건재할 수 있었다.

현재 동 미술관은 78만여 점의 그림, 사진, 아이콘, 동전 및 메달, 고인쇄물, 지도 등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그림은 고대미술관, Michalowski 교수관, Wyszynski 추기경 중세미술관, 외국회화관, 폴란드 회화관, 20세기 폴란드관, 폴란드 장식예술관 등에 전시되었다.

1995년에 동 미술관은 완전히 재정비되었고, 조각품이 재배치되었으며, Micha-lowski 교수관은 비잔틴 예술을 포함한 기독교 정교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동 미술관은 유럽 장식예술관, 동양미술관, 또 다른 고대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하고 있다.

□ 퀴리부인 생가 &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구시가(Old Town)의 북쪽에 위치한 동 박물관은 퀴리부인이 탄생한 생가로, 퀴리부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소장품으로는 실험도구와 여러 기념사진들이 있으며,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퀴리부인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상영된다.

개장시간은 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 이다.

□ 쇼팽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인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 킬로에 위치한다.

쇼팽은 당시 이곳의 영주였던 스카르벡 백작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하였던 쇼팽은 그의 나이 7세때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곳을 방문하여 예술 가로서의 그의 감성을 연마했으며, 지역 농민들이 즐겨 부르는 마주르카곡은 나중에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작곡한 많은 곡들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쇼팽이 바르샤바로 이사를 가고 스카르벡 백작이 죽은 후 이 집은 농장의 마굿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하여 갔으나, 19세기말 쇼팽을 추앙하였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이 집이 복원, 수리되어 박물관으로 변모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에서는 쇼팽 협회가 발족되고 이 집의 관리는 쇼팽 협회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이때에 원래 작은 지역이었던 것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넓은 부지를 추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하여,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천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코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한 뒤 작가 조르쥬 상드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떴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이 파리를 방문하여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11:00-15:30이면 이 생가에서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회가 열린다.

□ 유네스코 지정 9대 문화 유산

폴란드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 유산(World Heritage)' 9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1978년에 지정. 지정 당시 유네스코는 전세계에 단 12개소를 문화유산 지구로 선포했는데 크라쿠프 구시가지가 그 중의 하나였음.

16세기 폴란드의 수도를 현재의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 수도였으며,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중세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음.

또한 폴란드 전역을 통해 드물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戰禍를 입지 않은 덕분에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00년대의 100년 동안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내에 단 한 채의 신축 건물도 없는 것으로 유명.

타원형으로 조성된 시가지는 주변이 녹지대로 둘러 쌓여 도시건축 공학 측면에서도 유명함. 구시가지의 중심부는 40,000s/m(약 13,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광장이 조성되어 옛부터 市場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태리 베네치아의 마르코 광장과 더불어 유럽 최대 규모의 마켓스퀘어(Market Square)를 자랑하고 있음. 광장 중앙부에 있는 직물회관과 거대하면서도 내부 장식이 정교한 '聖 마리아' 성당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음.

중세식 구시가지와 더불어 인접한 왕궁(Royal Castle) 및 바벨 언덕(Wawel Hill)까지 보존지구에 포함되어 있음.

광장 주변부의 건물들은 대개가 지하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이 '부띠끄' 형태의 상점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하공간도 카페 등 훌륭한 지하 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바르샤바에는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페키지 투어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주로 열차편으로(Inter City로 불리는 특급열차로 약 2시간 30-40분 소요)이동하여, 현지에서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 60킬로미터 떨어진 유명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30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130미터에 조성된 관광 명소인 거대한 '소금 광산'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1978년에 지정. 1992년에는 폴란드 동부에 인접한 벨로루시(白러시아) 지역까지 보존구에 포함 시켜 관리되고 있음.

□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1978년에 지정. 13세기 이래 암염 광산으로 개발된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700년 이상 활용이 되고 있어 전 세계 광산 중 가장 오랜 기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염수 탐사를 하다 발견된 암염광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4세기에 이르러 왕국 재정 수입의 1/30이 소금 광산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함.

同 소금광산은 13세기, 당시 '헝가리'왕 벨라 4세의 딸인 '킹가'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다 는 전설과 함께, 킹가 공주는 '비엘리츠카'의 수호 성인으로 봉안되면서, 갱도 내 곳곳에 다양한 소금 조각상이 세워져 있음.

이후 700년 동안 약 7,500만 톤이 채취되었는데 이를 화차에 적재하면 지구 둘레의1/5에 해당하는 물량임. 전체 갱도는 지하 64미터에 위치한 1단계에서 지하327미터에 위치한 제9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250킬로미터 이르며, 채굴하면서 남겨진 방의 형태만 2,040개에 이름. 오늘날 일반에게 관람이 허용된 부분은 전체의 3%에 불과함.

한편, 광산 내부는 늘 화재와 낙반 사고 등이 뒤따라 매우 위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6세기에는 한 때 매년 전체 광부의 10%가 사고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지하 광산 내부를 둘러 보는 데는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는 없게 되어있음.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할 때 20-3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 구경을 하게 되므로 입장이 약간 지체됨.

또한 지하 광산내부는 평균 10도 내외로 다소 서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긴 팔 상의를 한 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마지막 입장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함.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1979년에 지정. 독일의 나치 제3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 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부터 압송된 유태인이었음.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舊쏘련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 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함. 바르샤바에서 360킬로미터, 크라쿠프 시에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엥침' (Oswiecim) 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되었음.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되어 온 수많은 유태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하여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뀜.

수용소 소장은 '루돌프 헤스' 였으며, 총 28개 동으로 구성된 수용소 규모였음. 피크 타임이었던 1942년에는 동시 수용인원이 한 때 28,000명에 달하였으나, 평상 시에는 15,000명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뉴른버그 전범 재판소 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헤스는 유태인들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음.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41년 아우슈비츠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브제젠카 (Brzezinka: 폴란드 지명. 독일명으로 비르케나우)에 제 2수용소를 지었는데, 후에 아우슈비츠 제 2수용소라고 명명되었음. 전체 부지가 무려 53만평에 달하며 수용소 건물만도 300동에 달하였는데, 1941년에는 한때 동시 수용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음.

이후 1942년에는 또 다시 인근 '모노비체' 지역에 제 3수용소를 설립한 바 있는데, 현재는 제1수용소와 제 2수용소만이 보존되어 일반 관람을 시키고 있는 것임.

당시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이곳에 진입하기 직전 나치에 의해 수용소 시설은 물론, 각종 문서 기록들이 파기되어 어느 누구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후 유태인들이 사실 추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자료들이 수집된 것임. 현재 전시되고 있는 희생자들의 유품들도 전쟁 말기에 파기되지 못한 채 발견된 일부분에 불과하나, 이것만으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례없던 비극을 짐작케 하고 있음. 매년 최소한 100만 명의 관광객,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음.폴란드 내에는 아우슈비츠 외에도 2차 대전 중 20만 명이 희생된 바르샤바 시내 소재 유태인 '게토' 지구가 극히 일부분만의 시설을 보존하고 있으며, 폴란드 동부의 중심도시 루블린 (Lublin)근교에도 엄청난 규모의 유태인 수용소 현장이 보존되고 있으나, 아우슈비츠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바르사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1980년에 지정.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소련군의 바르샤바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舊시가지(Old Town) 전체를 다이나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킴. 이후 폴란드는 공산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 각층의 고증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 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킴.

유네스코는 지정할 당시,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음.

규모 면에서는 크라쿠프의 구 시가지와 비교가 되지 않으나, '바르샤바'시의 80%가 2차 대전 중 초토화된 만큼,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바르샤바로서는 이곳 만이라도 드물게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곳이 되고 있음.

□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1992년에 지정, 16세기 '얀 자모이스키' 장군(Jan Zamoyski)에 의해 축조되고, 파우다(Paou- da)의 건축가 베르나르도 모란도(Bernardo Morando)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오늘날 "가장 완벽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 토룬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1997년에 지정. 14세기-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식 건축물을 구비한 "한자동맹(Hanseatic League)" 시절의 상업중심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토룬은 한때 독일의 튜턴 기사단(Teuton Knights)의 거점지역중의 하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튜턴'식 건축물의 잔재가 구 시가지 곳곳에 남아있음.

또한 이곳은 폴란드의 남북을 관통해 '발틱'해로 흘러내리는 '비스와' 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에 당시 호박 등 토산물의 무역 통로로도 잘 활용되던 곳임.

현재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지동설로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탄생지이기도 함.

□ 말보륵의 튜톤식 성채(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년에 지정. 튜톤 기사단 시대의 중심지로서 중세식 붉은 벽돌 양식을 이용하여 축성된 대표적인 성채로 꼽히고 있음. 19세기에 1차 보수가 있었으며,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후, 또다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튜톤식 성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한 만큼, 오늘날 독일로부터의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음.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되고, 가운데 탑 부분은 10층 높이로 당시의 건축술로 볼 때 벽돌만으로 이만한 높이를 축조한 것은 대단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 칼바리아 제브리돕스카(Kalwaria Zebrzydowsaka)

1999년에 지정.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16세기 유행한 '마니에리즘' 양식의 건축물과 자연풍경이 복합된 장소로, 전형적인 폴란드의 전통 민속종교인 "예수 고난(the Passion of Christ)회"의 기도 장소이기도 함.

3) 카톨릭 성지

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을 배출한 폴란드는 정통 카톨릭 국가로서 많은 종교적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모 발현지로서, 바르샤바 시에서 남서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성당에 있는 '검은 성모상'과, 바르샤바 시 서쪽 200 Km에 위치하고 있는 '리헨' 성당의 성모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첸스토호바(Czestochowa)시의 야스나 구라(Jasna Gora: 빛의 언덕)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검은 성모상은 폴란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은 이곳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검은 성모상의 유례는, 누가복음을 지은 루가(St. Luke) 성인(聖人)이 나자렛에서 성모로부터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던 삼나무 식탁에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 진다. 이후 서기 326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인 헬레나 성인에게 발견 되어 보관되었다가 헬레나 성인이 성지 순례차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할 때 아들 콘스탄틴 황제에게 전해졌으며, 황제는 곧 성당을 지어 이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5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전 하다가 결혼 지참 예물의 일부로 폴란드의 라디스와브 (Radisław) 왕에게로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에 보관되었던 성모상은 1382년 타타르족의 침공 시 '타타르'군이 쏜 화살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라디스와브 왕은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할 곳을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오폴레(Opole)로 옮기기로 하였다. 옮기던 중 '첸스토호바'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왕은 꿈을 꾸었다. 꿈에 자신들이 묵고 있는 첸스토 호바의 야스나 구라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의 정상에 "성모의 승천"이라는 조그만 목조 성당에 자신이 옮기고 있는 성모상이 걸려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일행이 오폴레로 출발 하기 위해 성모상을 마차에 옮겨 실었으나, 마차를 끄는 말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는 분명히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야스나 구라의 성당에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1430년 후스(Huss)의 추종자들이 야스나 구라를 침입하여 사원과 성모상을 파괴하려고 성모상을 향하여 칼을 뽑았다. 두 번이나 칼을 휘둘렀으나 성모상의 얼굴에 칼자국만 남겼으며, 세 번째 휘두르려 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때 입은 두 번의 칼자국이 지금의 성모상에 나타나 있으며, 후세에 이 칼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번 수리하였으나 보수가 끝나면 다시 선명하게 칼자국이 되살아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카지미어즈(Jan Kazimierz)왕은 1656년 야스나 구라 요새에서 스웨덴 침략군을 격파하고 폴란드와 유럽을 스웨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1659년 이 성모상을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공식 공포하였다. 폴란드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은 1962년 당시 교황 요한13세로부터 재차 인정을

받았다. 1979년 교황 으로 선출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성모'의 보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후로도 1983년과 1991년 두 차례 더 방문을 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야스나 구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

□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奇蹟)의 사례

1655년 폴란드를 침범한 스웨덴군은 야스나구라 성당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으나 성벽에 다다른 화살은 마치 그물에 걸린 듯 모두 성벽 밖으로 떨어지고, 이에 힘입은 폴란드군의 반격으로 스웨덴군은 대패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경을 묘사한 그림은 지금도 많은 화가들에게 의하여 그려지고 있다.

또한, 1920년 러시아를 적화시킨 레닌의 적군(赤軍)이 서유럽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맨 먼저 폴란드를 공격했다. 당시 독일은 폴란드가 곧 패배할 것이며 이어서 베를린으로 몰려올 러시아 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공황에 빠졌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동쪽, '비스와' 강변에 도착한 러시아군은 구름 속에 나타난 성모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싸였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폴란드의 독립 영웅 피우수드스키(Jozef Piłsudski)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군에 대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소련은 유럽 적화라는 야욕을 포기해야만 했고, 폴란드는 전 유럽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었다.

성모상이 검은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성모상의 유래를 조사한 크루즈(Joan Caroll Cruz)는 그 단서를 기도서에서 찾는다. 즉 성가(聖歌)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검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제단을 밝히는 초의 그을음이나 향연(香煙)이 착색되어 이로 인하여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성모상이 안치되었던 사원들이 이교도들에게 여러 번 침입을 받았고 그때마다 불에 탄 적이 많았는데 이 때의 화염(火焰)과 연기로 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모스(Moss)는 회화(繪畵)에서 인물의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는 것이 중세기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한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이 성모상의 모작(模作)은 여러 곳에 있는데, 스위스의 복제화는 야스나 구라의 성당의 원화(原畵)보다 더 검고, 미국 펜실베니아의 도일스타운에 있는 복제화는 오히려 엷은 살색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검은 성모상이 안치된 성당에는 기적에 힘입어 장애를 치료 받은 순례자들이 기증 한 선물들이 온 벽을 덮고 있으며, 성물들을 보관한 보물관에는 역대의 제왕이나 순례객 들이 봉헌한 수많은 보물과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중세 폴란드의 카톨릭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서적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성당내의 박물관에는 고(古) 성경과 성모상을 감싸던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의(聖衣)들이 있으며, 진열장 한쪽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신자들이 빵 조각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

했다는 묵주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노조'를 지도하던 바웬사의 투옥 당시의 초상화도 있으며, 그가 자유노조 지도자로서 정부와 함께 사인을 하던 볼펜과 함께 노벨 평화상도 진열되어 있다. 수상 후,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

□ 성모 발현지 리헨(Lichen)

또 다른 성모상으로 리헨(Lichen)의 것이 유명하다. 코닌(Konin) 근교에 있는 리헨의 성모상(애도의 성모상, sorrowful Madonna)은 1813년에 라이프치히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폴란드 출신 병사에 성모가 발현하면서 구함을 받은 이 병사가 고국으로 생환하여 자신에게 나타났던 성모상을 찾아서 봉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성모상은 1850년 리헨 근교 숲 속에서 발현,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콜레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만큼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967년 요한 바오로 6세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 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2000년은 성모 발현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많은 순례자들의 참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2만 명이 동시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전 유럽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성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기적을 일으키는 검은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는 폴란드 외에도, 알토팅(Altotting)의 성모(Bavaria, Germany), 헤르밋(Hermits)의 성모(Einsiedeln, Swiss), 과달루페(Guadalupe)의 성모(Mexico City), 몬세랏(Montserrat)의 성모(Spain), 틴다리(Tindari)의 성모상(Sicily)이 있다.